

331.132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정영수
정영국



책임연구원 : 김 영 수 (제주대학교 교수)
 연구원 : 정 영 국 (21세기위원회 정책자문회의)

이 보고서는 통일연수원이 자체계획에 의거 용역위촉한 연구결과로써 수록된 내용은 통일문제연구 및 정책개발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간행처의 공식전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통일원 통일연수원

〈요 약 문〉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귀순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귀순자들의 「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개발에 활용하는 데 있다. 최근들어 귀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 사회 적응실태 조사는 향후 통일 성취과정에서 겪게 될 문제들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는 예비실험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1) 설문 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실시, (2) 기존 연구결과 활용, (3) 탈북귀순자 체험수기 분석, (4) 탈북귀순자에 대한 남한 대학생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II. 탈북귀순자의 현황과 지원정책 분석

1. 귀순현황 관련 통계자료

귀순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사망·이민 및 주소불명으로 인한 신원확인 불가능자를 제외한 약 570여 명의 귀순자가 현재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70년대에 21명, 80년대에 49명, 90년대에 116명(90년 10명, 91년 19명, 92년 8명, 93년 7명, 94년 47명, 95년 12월 초 현재까지 25명)이 귀순한 것을 감안한다면, 생존 귀순자의 3분의 2가 정부 수립 이후부터 70년 이전에 귀순한 사람들이다.

귀순 형태는 60년대 이념형에서 90년대엔 경제·사회형으로 전환하고 있고,

탈출 경로는 최근들어 중국·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한 귀순자가 증가하는 등 탈북행태도 점차 「국제화」하고 있다. 또 과거 군인·농어민·선원 등이 주류를 이루던 귀순자의 직업도 90년대 들어 당정관료·대학생·별목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귀순자들의 고학력 현상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제유지 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외부정보 유입에 의한 비교판단능력도 높아 체제불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탈북귀순자 지원정책 분석

남북간에 체제경쟁이 극에 달했던 70년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은 「의거 월남한 귀순용사」라 불렸다. 목숨을 건 결단 끝에 자유의 품으로 안간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칭에 걸맞게, 대우도 78년에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하여 귀순자들에게는 정착금과 25평 이상의 주택, 취업알선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들어 증가하는 탈북귀순자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예전같이 얇게 되면서 「귀순용사」라는 용어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귀순용사」보다는 다분히 객관적인 「귀순자」라는 용어가 대신 쓰이게 되었다.

귀순자들에 붙여지는 이같은 용어변화처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에도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된 내용은 93년 6월 11일에 「월남귀순용사 특별법」을 대폭 손질하여 만들어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과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된 동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다.

그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이 또다시 개정되어 94년 9월 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북한동포들의 귀순 러시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시혜」차원에서 과도한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귀순자의 정착과 자활을 돕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과 귀순자에게 지불해야할 막대한 예산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반영되었다.

한편, 정부는 탈북귀순자의 행렬이 끊이지 않자 시행령 개정만 만족지 않고 현행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자체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해 왔는데, 이같은 법개정 노력은 시베리아 북한벌목장 탈출노동자와 중국내 북한국적 동포들이 대거 귀순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에 북한동포귀순 유인책으로 과도한 정착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III. 탈북귀순자의 의식구조와 대남한인식

1. 귀순자의 의식구조 및 성향

탈북귀순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북한체제 속에서 교육받고 사회화되면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가치 및 원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귀순 이후 적응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자유와 평등의 조화, 가치의 상대성과 다양성 등 남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가치와 매우 상치되는 사회생활 원리 및 가치관을 기준으로 생활해오고 있다. 북한에서 성장하고 남한에서 생활해야 하는 귀순자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1) 남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면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귀순자들은 귀순 초기 「여행의 자유」를 「자유」전체로 인식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 (2) 남한 사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귀순자들이 대부분 좋은 인상을 갖고 있

는데, 이는 비록 남한에 빈부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북한에서의 절대적인 빈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귀순자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단, 북한의 검소한 생활과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생활경험으로 인해 돈놀이와 무위도식하면서 생활하는 일부 남한 사람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표출하고 있다.
- (4) 귀순자들은 귀순 이후 느끼는 북한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동체 의식」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고, 이외에 「협동심」, 「순박함」, 「근면·성실」, 「인내심」, 「절약정신」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타율적인 성향」, 「창조력 부족」 등을 들고 있다.

2. 귀순자의 대남한인식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귀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순전 남한 사회의 실정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폐쇄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왜곡된 선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귀순전 「남한 사회는 죽자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 대부분 귀순자들의 견해이다.

상당수 귀순자들은 남한을 미제의 가난한 식민지이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며, 민주주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 결여로 남한 사회의 다원주의 및 욕구표출 방식을 북한의 통제되고 집단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다.

남한 사회에 대해 외국을 갔다가 온 여행자나 중국에 있는 동포, 혹은 조총련 귀국자 등을 통해 남한은 「물자가 많은 살기 좋은 곳」,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자본주의국가」라는 인상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의 공식 선전과 사

상 교육으로 인해 「남조선은 길거리에 판자집과 거지가 득실거리고, 한강물에선 썩은 냄새가 나는 곳」,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가난한 식민지」라는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귀순자들은 북한에 있을 당시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어 미군 주둔으로 인해 예속상태에 있는 남조선 동포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의식에 큰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며, 남한하면 시위·무질서 등으로 인한 혼란, 외래문화의 유입 및 성문제 등으로 인한 퇴폐 등을 연상했다고 한다. 그밖에 반부의 차, 이기주의 등을 남한 사회의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탈출을 결심하면서도 남한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귀순자들이 남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중국을 더 신뢰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귀순자들은 남한에 와서 실제로 살면서 「경제발전」, 「자율적인 사회」, 「민주화」 등을 남한 사회의 강점으로 들고 있고, 「자유로움」, 「근면성」, 「자율성」, 「창의력」, 「적극성」 등을 남한 사람들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반면, 실제로 살면서 느낀 남한 사회의 취약점은 「시위·무질서 등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 「정치불안」, 「국가관 결여」, 「사회의 퇴폐」, 「북한 실상을 믿지 않는 점」, 「미군 주둔」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대인관계」, 「사치·낭비」, 「냉정함」 등이 남한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말했다.

IV. 탈북귀순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애로사항

1. 보호(수용)기간 중의 심리적 변화 분석: 사례연구

보호(수용)기간 동안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이면서 적응해 나갔는지를 파악해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보호(수용)기간이 끝나 사회적응기에 들어간 귀순자들은 마치 제대한 사람이 과거 훈련받던 일을 얘기하는 것

과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90년대 귀순자 1명을 사례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보호(수용)기간 중에 나타난 심리적 변화과정과 적응양상을 심층분석해 보았다. 보호(수용)기간이라는 것이 귀순자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연구대상이 1명이라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보호(수용)기간 중에 나타나는 귀순자의 심리적 변화를 추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귀순 직후부터 신분통제가 해제되기 직전까지 약 8개월간 귀순자의 심리적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무엇보다 죄책감과 외로움에 괴로워 한다.
- (2) 탈북전에 형성된 시각에서 남한 사회를 바라본다.
- (3) 탈북전에 형성된 대미·대일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 (4) 탈북전에 형성된 가치관 및 인생관에 의해 새 삶을 설계한다.
- (5)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 (6)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즉 언어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크다.
- (7) 보호(수용)담당 관련 근무자로부터 받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 (8) 방문장소, 면담인사 선정 등 적응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력 또한 크다.
- (9) 종교자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종교를 신앙화하지 못하고 있다.

2.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애로사항

귀순자들의 적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파악된 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예비지식과 정보

가 없어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주로 귀순 초기에 겪는 어려움인데 지리에 익숙치 못하고, 버스 노선도 모르고, 지하철 타는 법도 모르고, 상식적인 물건값도 모르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사회의 초년생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 (2) 언어문제로 겪는 곤란이다. 언어로 인한 곤란도 여러 차원의 문제로 귀순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영어 및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남한에서 상용하고 있는 전문용어를 이해 못하는 것, 한자를 해독 못하는 것, 이복말씨로 인해 오해받거나 웃음감이 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3)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이는 주로 북한의 집단주의 사회와 남한의 개인주의 사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북한에서 교육받고 살면서 몸에 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남한 사회의 그것과 다름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이로 인해 귀순자들은 외로움, 그리움, 소외감, 열등의식 등을 느끼게 되어 미적응 및 부적응 양상들을 초래하고 있다.
- (4)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가치관 및 도덕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달라 받게 되는 혼란, 돈에 대한 가치인식의 미정립으로 인한 혼란, 단독귀순으로 인한 죄책감,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차별의식에 대한 지나친 반응, 국가 또는 기관의존적인 소극성 등이 그 대표적인 양상이다.
- (5) 경제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귀순자 지원정책이 계속 바뀜으로써 정착금이 줄어든 결과 최근 귀순한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 (6) 귀순자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 냉정함, 경멸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다. 이 현상은 최근 귀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문제가 체제경쟁의 이념적 차원을 벗어나면서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지적 열등감 및 사회적 지위 하락 역시 귀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응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귀순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의 가장 큰 원인이 남한 사람들의 차별의식과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일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대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귀순자 의식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조사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는 다음과 같다.

- (1) 약 90%를 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우선 귀순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태도를 보인 점이다. 이는 일단 귀순자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 (2) 귀순자들을 북한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문제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부모나 처자식을 두고 넘어올 수 있느냐는 견해도 「문제아」란 시각과 함께 응답자의 약 80% 이상을 차지했다.
- (3) 약 80%의 학생들이 귀순자들은 보상을 많이 받고 강연료를 많이 받아 몇몇의 사람만 제외하고는 꽤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귀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못 살게 된 몇몇 사람도 받은 돈 관리를 잘못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귀순자의 돈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 (4) 앞으로 계속해서 수없이 넘어올 귀순자들을 모두 지금처럼 대해 줄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과 더 잘해 줘서 통일을 이루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양분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 (5) 이렇게 답한 학생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귀순자 보호정책의 내용이나 수준을 거의 알지 못하고 조사에 응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를 남한 국민의 대귀순자 의식으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20

대 초반 남한 젊은층의 견해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느낀다. 만약 이런 대 귀순자 의식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욱 확산된다면 탈북귀순자들이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적응상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귀순자 자신과 귀순자를 둘러싼 환경에 있다.

귀순 후 문화적 충격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북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회의를 빠져 있거나 소극적인 생활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만큼 적응기간만 늘어나게 된다. 설문 조사 및 면접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귀순자들의 대부분은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은폐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태도는 남한 주민들의 태도가 귀순자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탓일 수도 있으나, 신분노출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꺼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주변 사람들보고 내 성격에 맞추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내 스스로 성격을 고쳐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 귀순자의 말처럼 귀순자들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남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이 요구된다.

귀순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남한 주민의 귀순자들에 대한 태도와 정부의 귀순자 지원정책이다.

한 귀순자가 “남한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 나라에 와서 살 자격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술회한 것처럼 남한 주민의 귀순자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 때 이들은 더욱 더 쉽게 적응

할 수 있다. 귀순자들은 자신에 대한 동료의식의 표명에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의 남한 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기준으로 귀순자들을 대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주민의 생활을 척도로 삼아 귀순자들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여기서 귀순자들은 대체로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비우호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문제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귀순자들의 의식구조를 남한 주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앞당겨 질 수 있으며, 통일성취 과정에서도 그만큼 남북한 주민간의 부작용을 덜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귀순자를 둘러싸고 있는 또다른 환경적 요소는 정부의 귀순자 지원정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귀순자들에게 정착금과 보상금 그리고 직업알선, 주택마련, 의료혜택 등 다분히 특혜의 성격을 띤 정책을 운영해왔다. 최근들어 지원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본질적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 귀순자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불만을 받게 되어 지원은 해주고 욕만 얻어먹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귀순자 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귀순자들에게 일시적인 보상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또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직업 알선은 오히려 적응에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충분한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직업훈련 또한 북한에서의 전직을 고려하고 본인의 희망을 충분히 감안한 후 실시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서로 다른 체제에 적응한다는 것은 단기간 지원이나 교육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귀순자들에 대한 물질적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심리적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도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서독의 효율적이고 체

계적인 동독 이주민 정책으로 인해 외형적인 사회적응에는 일단 성공했으나, 사회심리적 적응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지적되고 있는 데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충분한 시간적 요인은 물론이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정책과 남한 주민의 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 뿐만이 아니라 귀순자 자신의 적응하려는 의지가 결합되어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귀순자 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개발에 참고할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한다.

- (1)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주교재는 무엇보다 남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빠른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귀순자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혼란을 적게 겪고 적응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한 사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가치체계를 척도로 해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지를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어떤 준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살아왔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도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너무 많은 비중이 두어져서는 안 된다.

- (2)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또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 귀순자들 중에서도 적임자를 선발·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 (3)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연수원 내에 이를 전담할 전문운영부서 및 교육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 (4)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남한 주민들의 대북한인식 및 의식구조를 통일준비 차원에서 전환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

이는 귀순자 적응 목적 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일」을 위함이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을 폄하하거나 경멸하는 오락용 코메디물은 방송프로그램에서 추방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북한주제 오락용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된다면 앞으로 남한 주민들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우월감을 갖고 북한 주민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람의 통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귀순자의 대국민 이미지를 생각해 상업적 목적으로 귀순자의 눈물을 이용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방영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귀순자의 부적응 사례를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적지 않은 귀순자들이 적응과정에서 언론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한다.

- (5)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생활을 위한 안내서(GUIDE BOOK)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귀순자 적응에 필요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남한으로 내려올 경우 「한국정착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 차

I.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2. 연구방법 및 내용 / 21	
가. 연구방법 / 21	
나. 연구내용 / 23	
II. 탈북귀순자의 현황과 지원정책 분석	24
1. 귀순현황 관련 통계자료 / 24	
2. 탈북귀순자 지원정책 분석 / 29	
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제정 / 29	
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의 실행 / 30	
다.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 31	
라. 「귀순북한동포 보호법」개정의 필요성 / 32	
III. 탈북귀순자의 의식구조와 대남한인식	34
1. 귀순자의 의식구조 및 성향 / 34	
2. 귀순자의 대남한인식 / 37	
IV. 탈북귀순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애로사항	41
1. 보호(수용)기간 중의 심리적 변화 분석: 사례연구 / 43	
2.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애로사항 / 57	
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응양상 / 57	
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적응양상 / 60	
다. 사회·문화생활에서의 적응실태 / 61	

(1) 일상생활 전반 / 61	
(2) 의식주생활 / 63	
(3) 언어생활 / 64	
(4) 대인관계 / 65	
(5) 직장생활 / 70	
(6) 가정생활 / 72	
(7) 학교생활 / 73	
(8) 종교생활 / 76	
(9) 기타 사회·문화생활 / 79	
V. 결론 및 제언	85
1. 연구 결과 종합 / 85	
2. 제언 / 89	
참 고 문 헌	91
[부록 1] 귀순자 사회적응실태 면접조사 질문내용	
[부록 2]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부록 3]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	
[부록 4] 「독일인의 서독지역에서의 긴급수용에 관한 법」	
[부록 5]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탈출자에 대한 서독정착을 위한 지침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일이란 이제까지 서로 상충되는 사상과 체제하에서 상호 적대적 대립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집단이 갑자기 뒤섞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대한 사회문화적 난제들이 분출될 수밖에 없음은 이미 통일독일의 경우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특히 독일과는 또 다르게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보다 경직된 체제하에서 반세기 동안 의미있는 어떤 상호교류도 차단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기나긴 반목과 증오의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문화적 문제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양쪽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가치의 혼돈과 사회심리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예상하듯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좌절감과 충격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기존 가치관 및 세계관의 급작스런 붕괴로 심각한 불안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에 대해 열등의식과 혐오감을 표출하는 한편, 심한 패배의식 속에서 김일성-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배계층에 대해 공격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남한 주도의 통일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방향감각의 상실로 심각한 불안의식과 퇴행적인 공격 성향을 나타낼 것이다.

한편, 남한 주민들도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과중하거나 북한 주민들의 대량난파로 남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악화될 경우 통일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강하게 표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월의식 및 차별의식

을 강하게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간의 교류가 현재와 같이 전면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통일을 맞을 경우,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 예상된다(정영국, 1994b: 151~152, 161~162).

이런 부정적인 예측들이 모두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의 통일준비 작업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된 새로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데 그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통일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퇴행적 행태의 분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어떤 사회재교육 프로그램이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남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가?

아직 남북한간의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단 이후 남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적지 않고, 특히 최근들어 이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 사회 적응실태 조사는 향후 통일성취 과정에서 겪게 될 문제들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는 예비실험적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북귀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어떤 적응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남북한간의 이질화 정도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귀순자들을 남한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인 '사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1) 설문 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실시

80년대 중반이후 귀순한 귀순자 44명을 대상으로 남한 사회의 적응문제와 관련된 질문지를 미리 제시하여 일단 면접내용을 인지시킨 후, 질문지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탈북귀순자의 의식구조와 심리적 특성이 파악되는 방식을 취했으며,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부록 1〉 참조)

(2) 기존 연구결과 활용

탈북귀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동안 탈북귀순자에 대한 남한 사회 적응실태 연구가 미진했으나 최근에 좋은 연구결과들이 산출되고 있다. 연구자료로 활용된 기존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민병천. 1980.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 선한승. 1995.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정책과제』.
- 통일원. 1994.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 한국교육개발원. 1994. 『내가 받은 북한교육』.
- 고태우. 1994. “월남 귀순자 현장 경험사례”
- 민성길·전우택. 1995. “‘사람의 통일’ - 정신의학적 접근”
- 성영신 외, 1993. “남북한의 경제 심리 비교 - 귀순자의 심층면접을 토

대로”

- 윤여상. 1994.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전우택. 1995.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

(3) 탈북귀순자 체험수기 분석

수기에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이 상세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감정표현도 비교적 솔직하게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탈북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실태를 분석하는 소재로서 그 유용성이 크다.

물론 북한을 탈출했다는 점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남한 사회에 수용되고자 하는 심리적인 측면의 표출이 완전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윤여상, 1994: 5, 11), 수기의 대부분은 탈북귀순자의 탈북 이전 상황, 탈북동기 및 탈북과정이 먼저 자세히 기술된 후 현재의 심정 및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탈북귀순자의 개인적 배경과 심리적 요인을 서로 연관시켜 분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수기는 다음과 같다.

- 강명도. 1995.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 강봉학. 1995. 『원쑤의 나라로』.
- 강철환·안혁. 1993. 『대왕의 제전』(1)(2)(3).
- 고영환. 1992. 『평양 25시』.
- 김관태 편. 1993. 『안경없는 군대 이야기』.
- 김광호. 1990. 『광호의 일기』(1)(2)(3).
- 김신조. 1994.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 김영성. 1995. 『오, 수령님 해도 너무 합니다』.
- 김 용. 1993. 『머리를 빠는 남자』.

- 김 용. 1993. 『빨래하는 남자』.
- 김지일. 1992.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 김현희. 1992. 『사랑을 느낄때면 눈물을 흘립니다』.
- 김현희. 1991.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1)(2).
- 문용수. 1991. 『마지막 선택』.
- 안 혁. 1994. 『내가 남이냐 내가 남이냐』.
- 여만철 외. 1995. 『와 헛바쿠를 돕네까?』.
- 장기홍. 1993. 『울음보가 터진 남자』(1)(2).
- 전철우. 1995. 『나는 행복하지 않다』.
- 전철우. 1994. 『평양 놀새 서울 오렌지』.
- 한성호 외. 1994. 『초상집이라 해서 초상화 그리는 줄 알았더니』.

(4) 탈북귀순자에 대한 남한 대학생 의식조사

탈북귀순자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의식조사의 일환으로 서강대, 숙명여대, 제주대학교의 재학생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탈북귀순자에 대한 견해를 수집하였다. 이는 탈북귀순자들이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차별대우 및 편견을 확인해 보려는 의도에서 실시하였다.

나.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탈북귀순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탈북귀순자들의 의식구조와 남한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탈북귀순자들의 적응실태를 살펴보고,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취합한 후 그 원인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북귀순자들의 적응도를 향상시키고, 귀순자 재사회화교육을 적응프로그램 개발 및 통일 이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시 참고가 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탈북귀순자의 현황과 지원정책 분석

1. 귀순현황 관련 통계자료

「귀순」의 사전적 의미는 「반항심을 버리고 순종함」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침투해서 교전을 벌이다 마지막에 항복한 투항자나 체포된 간첩은 귀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도 검거 후 대부분 풀려나와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 경위나 방법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결과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어 이를 포괄하여 보통 「귀순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인식은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부록 2〉 참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5년 12월 초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남지역으로 귀순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귀순자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밀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어, 총귀순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귀순북한동포 보호대상자 등록대장」에는 탈북귀순자의 개별 인적사항이 순번-연월일-보호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본급 및 가산급 등급-주택희망여부-비고의 순으로 실려 있는데, 95년 중반에 발표된 한 연구결과는 귀순자들의 일련번호가 752

구명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북귀순자들의 적응도를 향상시키고, 귀순자 재사회화교육을 적응프로그램 개발 및 통일 이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시 참고가 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탈북귀순자의 현황과 지원정책 분석

1. 귀순현황 관련 통계자료

「귀순」의 사전적 의미는 「반항심을 버리고 순종함」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침투해서 교전을 벌이다 마지막에 항복한 투항자나 체포된 간첩은 귀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도 검거 후 대부분 풀려나와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 경위나 방법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결과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어 이를 포괄하여 보통 「귀순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인식은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부록 2〉 참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5년 12월 초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남지역으로 귀순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귀순자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밀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어, 총귀순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귀순북한동포 보호대상자 등록대장」에는 탈북귀순자의 개별 인적사항이 순번-연월일-보호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본급 및 가산급 등급-주택희망여부-비고의 순으로 실려 있는데, 95년 중반에 발표된 한 연구결과는 귀순자들의 일련번호가 752

번을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선한승, 1995).

이들 중 사망·이민 및 주소불명으로 인한 신원확인 불가능자를 제외한 약 570여 명의 귀순자가 현재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70년대에 21명, 80년대에 49명, 90년대에 116명(90년 10명, 91년 19명, 92년 8명, 93년 7명, 94년 47명, 95년 12월 초 현재까지 25명)이 귀순한 것을 감안한다면, 생존 귀순자의 3분의 2가 정부 수립 이후부터 70년 이전에 귀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귀순자의 사회적 배경과 현황은 94년 12월 말 통일원 공보관실에서 60년대 이후의 귀순자를 상대로 실시한 면담 및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밝혀진 바 있는데, 60년대 전후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불만 등 이념적 동기가 귀순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 반해, 80년대 이후엔 처우불만, 처벌우려, 이성문제가 더 큰 동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일원, 1994a).

〈표 1〉 귀순동기별 분포

구 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빈 도	비 율
비교인식	37	3	8	6	54	26
처우불만	3	4	4	26	37	17
성분불량	7		4	15	26	13
처벌우려		4	6	10	20	10
동반귀순	1		11	7	19	9
체제불만	10		2	6	18	9
이성문제	1	2	9	5	17	8
복무불만	6	2	4	1	13	6
공금유용			1	4	5	2
합 계	65	15	49	80	209	100

* 자 료 : 통일원, 1994a.

통일원은 정부 수립 이후 귀순한 인사 700여 명 가운데 50년대 귀순자 180여 명, 사망·이민자 170여 명, 순수 귀순자로 분류하기 힘든 자수자, 검거 전향자 150여 명 등 500여 명을 제외하고 주로 60년대 이후의 순수 귀순자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귀순자 129명의 귀순동기는 「처우불만」(30명), 「성분불량」(19명), 「동반귀순」(18명), 「처벌우려」(16명), 「이성문제」(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한 사회를 동정한 「비교인식」(14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공급유용을 한 당·정원들의 귀순은 80년대 1명, 90년대 4명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뒤 도피차원에서 귀순을 결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60년대 귀순자 65명 중 「비교인식」(37명)과 「체제불만」(10명) 때문에 귀순한 경우가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귀순동기가 갈수록 이념적 문제에서 개인적 문제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탈북귀순자들의 귀순 형태가 60년대 이념형에서 90년대엔 경제·사회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탈출 경로를 보면 지난 60년대는 귀순자의 50%가 휴전선에 인접한 황해도와 강원도에서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귀순했으나, 80~90년대 들어 중국·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한 귀순자가 증가하는 등 탈북행태도 점차 「국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귀순경로별 분포

구 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빈 도	비 율
육 상	42	11	10	2	65	31
해 상	18	1	7	1	27	13
공 중	1		1		2	1
제3국	4	3	31	77	115	55
합 계	65	15	49	80	209	100

* 자 료 : 통일원, 1994a.

귀순자들의 탈북 당시 직업은 군인이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당정원(35명), 학생과 별목공(각각 25명), 기술자(23명), 선원(16명), 농어민(15명)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농어민은 모두 60년대 귀순자로 70년대 이후로는 전혀 없다. 또 과거 군인·농어민·선원 등이 주류를 이루던 귀순자의 직업도 90년대 들어 당정관료·대학생·별목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참조)

〈표 3〉 탈북 당시 직업별 분포

구 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빈 도	비 율
군 인	20	8	13	5	46	22
당 정 원	6	4	7	17	35	17
학 생			12	13	25	12
별 목 공				25	25	12
기 술 자	10	2	5	6	23	11
선 원	10	1	5		16	8
농 어 민	15				15	7
노 동 자	3		3	7	13	6
교 원	1		1	5	7	3
무 직			3	1	4	2
합 계	65	15	49	80	209	100

* 자 료 : 통일원, 1994a.

귀순시기별로는 60년대 65명, 70년대 15명, 80년대 49명, 90년대 80명으로 북한 사회가 70년대에 가장 안정적이었던 반면, 90년대에는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출신지역별로는 평양(36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황해남도(30명), 평안북도·함경북도(각각 28명), 함경남도(22명), 평안남도(18명), 강원도(14명)의 순이었다.

한편 귀순자들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17%, 고졸이 전체의 46%, 대졸은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졸 학력수준(전문대졸 및 대학중퇴도 포함)을 가진 탈북귀순자가 최근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의 고학력 현상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제유지 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외부정보 유입에 의한 비교판단능력도 높아 체제불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표 4〉 참조)

〈표 4〉 학력별 분포

구 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빈 도	비 율
무 학			1	1	2	1
국 졸	9	1	1	1	12	6
중 졸	10	2	4	4	20	10
고 졸	34	6	23	34	97	46
대 졸	12	6	20	40	78	37
합 계	65	15	49	80	209	100

* 자 료 : 통일원, 1994a.

또 95년에 발표된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귀순자 68명을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수준을 물은 결과, 50~90만원 미만과 90만원~130만원으로 답한 것이 각각 33%로 가장 많고, 150~200만원 미만이 2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수입 이외에 반공강연, 방송출연 등의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1% 수준이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한 수입의 규모는 50만원 미만이 60%로 가장 많았고, 50~90만원 미만과 90~130만원 미만이 각각 13%, 13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13%나 되었다(선환승, 1995).

본 연구에서 귀순자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한 결과는 50만원 이하 9%, 51~100만원 32%, 101~150만원 14%, 150만원 이상 16%, 무응답 2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득 실태는 <표 5>와 같은 탈북귀순자의 주관적 귀속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생활정도에 대한 귀속의식별 분포

구 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빈 도	비 율
상 류	6		5		11	7
중 류	38	10	41	25	114	74
하 류	21	5	3		29	19
합 계	65	15	49	25	154	100

* 자 료 : 통일원, 1994a.

2. 탈북귀순자 지원정책 분석

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제정

남북간에 체제경쟁이 극에 달했던 70년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은 「의거 월남한 귀순용사」라 불렸다. 목숨을 건 결단 끝에 자유의 품으로 안긴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칭에 걸맞게, 대우도 78년에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하여 귀순자들에게는 정착금과 25평 이상의 주택, 취업알선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이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이웅평씨나 김만철씨 가족 등은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 83년 2월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씨의 경우 당시 미그기 보상금으로 13억 6천만원과 주택 등 모두 약 15억여 원의 정착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또 87년 2월

본 연구에서 귀순자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한 결과는 50만원 이하 9%, 51~100만원 32%, 101~150만원 14%, 150만원 이상 16%, 무응답 2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득 실태는 <표 5>와 같은 탈북귀순자의 주관적 귀속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생활정도에 대한 귀속의식별 분포

구 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빈 도	비 율
상 류	6		5		11	7
중 류	38	10	41	25	114	74
하 류	21	5	3		29	19
합 계	65	15	49	25	154	100

* 자 료 : 통일원, 1994a.

2. 탈북귀순자 지원정책 분석

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제정

남북간에 체제경쟁이 극에 달했던 70년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은 「의거 월남한 귀순용사」라 불렸다. 목숨을 건 결단 끝에 자유의 품으로 안긴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칭에 걸맞게, 대우도 78년에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하여 귀순자들에게는 정착금과 25평 이상의 주택, 취업알선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이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이웅평씨나 김만철씨 가족 등은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 83년 2월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씨의 경우 당시 미그기 보상금으로 13억 6천만원과 주택 등 모두 약 15억여 원의 정착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또 87년 2월

배를 타고 일가족과 함께 월남한 김만철씨 가족도 5억여 원의 정착금과 주택 2채 등을 포함해 모두 7억여 원의 정착금으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들이 당시 정부로부터 이같이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귀순자가 드물었던 당시의 보상법은 귀순자의 공적에 따라 개인당 순금 1천9백g(현시가 2천3백만원·5급)~ 1만4천5백g(현시가 1억6천8백만원·1급)에 25명 이상의 주택을 무상공급하는 등 많은 정착금이 뒤따랐다. 더구나 시민환영대회를 치루고 나면 각 기업체로부터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의 지원도 쇄도했다.

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의 실행

그러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들어 증가하는 탈북귀순자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예전같지 않게 되면서 「귀순용사」라는 용어는 거의 자취를 감추는 「귀순용사」보다는 다분히 객관적인 「귀순자」라는 용어가 대신 쓰이게 되었다.

귀순자들에 붙여지는 이같은 용어변화처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에도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된 내용은 93년 6월 11일에 「월남귀순용사 특별법」을 대폭 손질하여 만들어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과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된 동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다.(<부록 2, 3> 참조)

그 결과 가족과 함께 월남한 여만철씨 가족의 경우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으로 대체입법되면서 정착금 지원규모가 줄어 2천6백44만2천원의 정착금과 함께 15명 규모의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금 3천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그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이 또다시 개정되어 94년 9월 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귀순자 급증으로 당초 책정된 5억 9천만원의 예산이 연초에 바닥나버리는 등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른 정착금을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는 부도사태까지 발생한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을 대폭 손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만철씨 일가족 5명과 시베리아 벌목공 등 94년 8월까지 무려 37명의 새로운 탈북귀순자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귀순 러시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시혜」차원에서 과도한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귀순자의 정착과 자활을 돕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과 귀순자에게 지불해야할 막대한 예산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결들인 것이었다.

그 결과 귀순자에게 지급되던 정착금은 대폭 삭감되어 귀순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규모가 최고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개정 전까지는 동거가족 수에 따라 단독귀순자의 경우 월최저임금액(94년 기준 24만5천2백10원)의 60배(1천4백71만2천6백원), 2인 이하는 80배, 3인 이상이면 1백배까지 정착금으로 지원했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이를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나눠 기본금의 경우 각각 20배(4백90만4천2백원), 30배, 40배로 대폭 줄여 지급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또 가산금의 경우 귀순자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월최저임금액의 60배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을 뿐 아니라, 이밖에 귀순자에게 개정 전까지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주택을 무상제공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상지원 또는 주택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수준으로 변경시켰다.(<부

록 3) 참조)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해 귀순자 전원에게 최하 2천만원, 최고 1억5천만원의 특별신분 보상금을 별도로 줬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5분의 1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귀순자 1인에 대한 혜택은 7백50만원의 정착금과 가산금, 7백여 만원의 주거자금 지원, 본인에 대한 취업알선 등이 전부가 되었다.

라.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한편, 정부는 탈북귀순자의 행렬이 끊이지 않자 시행령 개정에 만족치 않고 현행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자체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해 왔는데, 이같은 법개정 노력은 시베리아 북한벌목장 탈출노동자와 중국내 북한국적 동포들이 대거 귀순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에 북한동포귀순 유인책으로 과도한 정착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이 개정안의 큰 방향은 귀순동포에 대해 시혜적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한 정착금과 보조금 등을 없애는 대신 정착과 자활을 돕는 쪽으로 관련규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는 "통독전의 서독은 동독인이 넘어올 경우 단돈 2백 마르크(한화 약10만원)의 정착금만을 지급하고 대신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했었다"며 "귀순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차원의 일시적 정착금 지급보다 오히려 국내정착을 위해 생활능력을 갖추게 지원하는 것"이라는 관련 정부 당국자의 말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귀순간첩이나 「체제불만」 등의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귀순용사 등에게 적용하던 기존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벌목공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의 성격을 띤 새로운 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과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이 모두 분단국의 난민정착을 위한 것이지만 그 성격과 지원행태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법률 성격상 우리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은 체제선전적인 측면이 강하다. 78년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일단 남한으로 넘어오면 무조건 한국정부가 잘 살게 도와준다」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은 비이데올로기적이다. 서독의 체제 우월 선전보다 동독에서 탈출한 사회·경제적 난민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 지원에서도 우리 보호법은 귀순자의 신분·휴대장비·직급·정보 등에 따라 최저 1천9백만원에서 최고 1억4천만원을 보상금조로 지급하고 있다(〈부록 3〉 제6조 참조). 반면 독일의 경우 동독인이 넘어올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돈 2백마르크를 지급할 뿐 별도의 보상금을 일절 주지 않는다. 또 우리는 귀순자에게 주거지원비·교육비 지원은 물론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제5조(특별임용)에 귀순한 북한의 군인 및 공무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을 주어 정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직업훈련 기회만 제공할 뿐이다(〈부록 2〉 참조).

앞으로 어떤 성격의 보호법이 제정될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법제정 과정에서 서독의 탈출자 수용정책이 통일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독 정부와 국민들은 통일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동독 이탈자들을 처음부터 체계있고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보살폈다. 이를 토대로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마지막에는 홍수를 이룬 동독 난민들을 질서있게 수용해 나갔다. 만일 이 수용단계가 실패했더라면 통일과정이 지연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옴은 물론 최악의 경우 통일달성이 어렵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

능성까지 상상해볼 수 있다(서병철, 1995).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귀순동포보호법」 규정으로는 이들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없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서독의 「긴급난민수용법」을 원용한 새로운 성격의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하겠다.

Ⅲ. 탈북귀순자의 의식구조와 대남한인식

1. 귀순자의 의식구조 및 성향

탈북귀순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북한체제 속에서 교육받고 사회화되면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가치 및 원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귀순 이후 적응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 수립과 함께 북한 당국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사회주의 이념을 그대로 도입한 결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리」, 「집단주의의 원리」, 「증오의 원리」, 이론을 노동현장에서 확인하고 연결한다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원리」, 「조기 교육의 원리」, 「평등주의의 원리」, 「혁명전통 교양의 원리」, 「주체사상의 원리」 등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가치와 개념을 설정하여 북한 주민들을 사회화시켜왔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자유와 평등의 조화, 가치의 상대성과 다양성 등 남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가치와 매우 상치되는 사회생활 원리 및 가치관을 기준으로 생활해오고 있다. 북한에서 성장

능성까지 상상해볼 수 있다(서병철, 1995).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귀순동포보호법」 규정으로는 이들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없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서독의 「긴급난민수용법」을 원용한 새로운 성격의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하겠다.

Ⅲ. 탈북귀순자의 의식구조와 대남한인식

1. 귀순자의 의식구조 및 성향

탈북귀순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북한체제 속에서 교육받고 사회화되면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가치 및 원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귀순 이후 적응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 수립과 함께 북한 당국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사회주의 이념을 그대로 도입한 결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리」, 「집단주의의 원리」, 「증오의 원리」, 이론을 노동현장에서 확인하고 연결한다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원리」, 「조기 교육의 원리」, 「평등주의의 원리」, 「혁명전통 교양의 원리」, 「주체사상의 원리」 등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가치와 개념을 설정하여 북한 주민들을 사회화시켜왔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자유와 평등의 조화, 가치의 상대성과 다양성 등 남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가치와 매우 상치되는 사회생활 원리 및 가치관을 기준으로 생활해오고 있다. 북한에서 성장

하고 남한에서 생활해야 하는 귀순자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면접조사나 수기분석, 그리고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귀순자의 의식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귀순자들은 귀순 초기 「여행의 자유」를 「자유」전체로 인식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런 성향은 북한 사회를 체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라고 한다(한성호, 1994: 160).

한편, 귀순자들은 한동안 「자유」라는 개념을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 사회에는 「자유」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87년에 사망한 귀순자 K씨가 일으킨 여자문제는 바로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인식한데서 발생한 일이었다.

귀순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자유」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심지어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귀순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 계급과 사회와 자기 민족의 이익을 떠난 초계급적 자유는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망친다고 강조하고 있는 북한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귀순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면서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부분에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억압되었던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해 상대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윤여상, 1994: 21).

또한 남한 사회의 자유로움을 소중히 여기고 쉽게 적응해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과도한 자유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견해에 대부분의 귀순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지나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사람에게 자유와 독립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고독과 불안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남한 사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귀순자들이 대부분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당원·비당원의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대우 등을 북한 사회의 불평등 요소로 지적한 귀순자들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사회의 특성상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빈부격차라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귀순자들이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비록 남한에 빈부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북한에서의 절대적인 빈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여상, 1994: 29).

셋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개념인 「사유재산」에 대한 귀순자들의 의식구조는 다음과 같다.

북한경제체제의 변동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58년이 지나면서 북한 사회내에서는 사실상의 사유재산제도가 소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서 생활해 온 귀순자들 대부분은 사유재산의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의 사상으로 세뇌되었다고 하지만 남보다 더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정도의 차이이지 여기 남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전철우, 1994: 75)는 말은 북한 주민들도 누구나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사유재산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사유재산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측면보다는 대체로 남한 사회의 분계점을 제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화장실 앞에서까지 돈을 벌려는 것은 곱게 볼 수 없다."(김균태, 1993: 72)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또 돈놀이와 무위도식하면서 생활하는 일부 남한 사람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표출하고 있는데(김용, 1993b: 236), 이는 북한의 검소한 생활과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생활경험에 원인이 있다

고 본다.

넷째, 면접 조사 결과 귀순자들은 귀순 이후 느끼는 북한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동체 의식」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고, 이외에 「협동심」, 「순박함」, 「근면.성실」, 「인내심」, 「절약정신」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타율적인 성향」, 「창조력 부족」 등을 들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인 집단주의 원리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은 강하지만, 타율적이고 창의력이 부족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타산에 밝은 남한에 와서 비로소 상대적으로 북한의 순수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귀순자의 대남한인식

귀순자들에게 「귀순」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데, 귀순 전후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는 귀순자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귀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순전 남한 사회의 실정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폐쇄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왜곡된 선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귀순전 「남한 사회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 대부분 귀순자들의 견해이다. 물론 유학생이나 해외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일부 귀순자들은 남한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귀순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은 북한의 철저한 사상 교육 및 세뇌 교육으로 인해 귀순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인 남한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 본다.

넷째, 면접 조사 결과 귀순자들은 귀순 이후 느끼는 북한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동체 의식」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고, 이외에 「협동심」, 「순박함」, 「근면.성실」, 「인내심」, 「절약정신」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타율적인 성향」, 「창조력 부족」 등을 들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인 집단주의 원리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은 강하지만, 타율적이고 창의력이 부족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타산에 밝은 남한에 와서 비로소 상대적으로 북한의 순수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귀순자의 대남한인식

귀순자들에게 「귀순」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데, 귀순 전후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는 귀순자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귀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순전 남한 사회의 실정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폐쇄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왜곡된 선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귀순전 「남한 사회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 대부분 귀순자들의 견해이다. 물론 유학생이나 해외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일부 귀순자들은 남한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귀순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은 북한의 철저한 사상 교육 및 세뇌 교육으로 인해 귀순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인 남한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상당수 귀순자들은 남한을 미제의 가난한 식민지이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며, 민주주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 결여로 남한 사회의 다원주의 및 욕구표출 방식을 북한의 통제되고 집단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다. 남한 사회에 대해 외국을 갔다가 온 여행자나 중국에 있는 동포, 혹은 조총련귀국자 등을 통해 남한은 「물자가 많은 살기 좋은 곳」,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자본주의국가」라는 인상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의 공식 선전과 사상 교육으로 인해 「남조선은 길거리에 판자집과 거지가 득실거리고, 한강물에선 썩은 냄새가 나는 곳」,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가난한 식민지」라는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귀순자들은 북한에 있을 당시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어 미군 주둔으로 인해 예속상태에 있는 남조선 동포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의식에 큰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며, 남한하면 시위·무질서 등으로 인한 혼란, 외래문화의 유입 및 성문제 등으로 인한 퇴폐 등을 연상했다고 한다. 그밖에 빈부의 차, 이기주의 등을 남한 사회의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탈출을 결심하면서도 남한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귀순자들이 남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중국을 더 신뢰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같은 대남한관은 다음의 증언에도 잘 나타난다.

“남한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K 씨)

“남한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C 씨 외 5인)

“남한에 기대한 것은 없습니다. 남한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중국은 믿었으나, 남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Y 씨)

KBS 사회교육방송이 94년 10월 시베리아 북한벌목공 귀순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벌목공 전원이 귀순하기 전 사회교육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으며, 96%가 사회교육방송이 귀순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별목공 뿐 아니라 90년대에 귀순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수기에도 사회교육방송을 한밤중에 청취한 사실을 적고 있는데, 최근 귀순자들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10% 이상이 사회교육방송을 듣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한 소식 뿐 아니라 외부 세계의 정보도 얻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사회교육방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 지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증언이기도 하지만, 한편 북한 사람들의 90% 가량은 북한 당국에서 만들어 놓은 남한상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귀순자들은 남한에 와서 실제로 살면서 「경제발전」, 「자율적인 사회」, 「민주화」 등을 남한 사회의 강점으로 들고 있고, 「자유로움」, 「근면성」, 「자율성」, 「창의력」, 「적극성」 등을 남한 사람들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반면, 실제로 살면서 느낀 남한 사회의 취약점은 「시위·무질서 등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 「정치불안」, 「국가관 결여」, 「사회의 퇴폐」, 「북한 실상을 믿지 않는 점」, 「미군 주둔」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대인관계」, 「사치·낭비」, 「냉정함」 등이 남한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귀순 후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귀순전 북한에서의 경력에 따라 다소 인식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남한의 발전된 모습에 경이로움을 표시하고 우호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해외생활 경험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귀순자들이 쓴 수기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윤여상, 1994: 84-86).

이는 그만큼 남한 사회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학력과 연령, 성분 등에서 오는 차이보다는 해외생활 경험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생활 경험자들이 상대적으로 남한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에 인색함을 알 수 있다(고영환, 1992: 29~30; 전철우, 1994b: 138,194; 김지일, 1992: 206; 김현희, 1991a: 333). 이는 해외생활을 통해 얻은 비교시각에서 남한을 평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한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서 오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외교관 출신으로 이른바 「국제감각」을 지닌 한 귀순자의 견해이다.

“내가 본 서울의 첫 인상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었다. 남한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 하나라는 얘기를 들었을때 파리나 브뤼셀시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간판 때문이었는지 실제로는 조금 조잡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상품은 길바깥까지 진열할 정도여서 유럽보다 물자가 더 풍부해 보였다. 그러나 20달러짜리 위스키가 서울의 고급식당에서 2백달러에 팔리는 것을 보고 정신이 멍했다.”(고영환, 1992: 29~30)

그렇다고 해외생활 경험자의 귀순 초기의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반드시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생활 경험자만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토로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귀순자들도 남한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남한 사회의 무질서, 교통지옥 등 시민의식의 부족을 느낀다.”

“길거리의 쓰레기더미나 행인들이 담배꽂초를 아무 곳이나 버리는 것 등에 비위가 상했었다.”

“한국에 내려 온 첫 느낌은 ‘자유롭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북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지만 집단시위나 항거가 적은 이유는 감시·통제체제가 완벽한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훈련과 교육을 통해 ‘육구절제’를 배워왔다는 점도 있다. 이런 점에서 남한 사람들은 육구수준이 너무 높아 정치

데모나 노사분규가 잦다고 느껴진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서울 사람들의 인상은 ‘깨끗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IV. 탈북귀순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애로사항

북한에서 귀순한 인민군 출신 귀순자가 동두천시의 한 육군부대에서 반공강연을 마치고 사라졌다가 하룻만에 전남 광양시에서 붙잡힌 몇해 전 사건은 귀순자들이 남쪽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심적 갈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그는 월남한 뒤 당시까지 육군 정보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해 사실상 일반인과의 접촉이 차단됐었는데, 그가 찾아간 광양시의 사람은 보호기간 중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알게 된 사람으로, 귀순자가 남쪽에서 「자유스럽게」 만난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가 동두천에서 광양까지 기차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아는 사람을 찾아간 데서 귀순자의 심정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다른 귀순자들은 말하고 있다. 실제로 귀순자들은 자신의 신분과 귀순 동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귀순 이후부터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일반인으로 생활할 때까지, 혹은 일반인으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고비고비마다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심리적 갈등은 대부분 남북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과 남쪽의 정보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귀순자들은 털어놓았다.

귀순자들은 귀순 직후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동안 육군 정보사에서 생활

그러나 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역시 북에 두고온 가족 생각이다. 월남한 뒤 새로 결혼을 해 가정을 꾸미고서도 잠꼬대로 북에 두고온 아이 이름을 부르는 이도 있다고 한다. 괴로움을 술로 달래기 위해 폭음을 하는 이들도 많다. 공탁호, 윤대윤씨의 경우 과음으로 간이 나빠져 간경화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80년대 초에 귀순한 귀순자는 “월남한 뒤 집도 받고 보상금도 많이 받아 걸보기엔 일확천금에 성공한 행운아로 보이지만 사실은 분단의 철조망에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끓아가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게 우리들”이라는 자조적인 평을 하기도 했다.

1. 보호(수용)기간 중의 심리적 변화 분석: 사례연구

탈북귀순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실태는 최초의 통제적 상황, 즉 피포 또는 탈출에서 오는 긴장감으로 젖은 보호(수용)기간과 사회에서 직접 적응하는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제된 사회에서의 의식과 그 후의 의식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통제된 상황에서는 비교적 탈북전 의식과 행동양태가 나타나지만, 그 후의 상황에서는 달라진 상황에 적응해 가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고태우, 1994:337~338)

현재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남한에 도착 즉시 간단한 안기부나 정보사 등의 관계당국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통제된 상황에서 적응기간을 거치게 된다. 귀순자의 신분, 귀순동기 등에 따라 그 기간은 각각 다르나 통상 1년을 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귀순자들 대부분은 주로 텔레비전과 남한사회 여러 곳의 직접 전학을 통해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탈북귀순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교육받은 사항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탈북전 갖고 있었던 대남한 인식을 고쳐가는 양상을 보인다.

보호(수용)기간 동안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이면서 적응해 나갔는지를 파악해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보호(수용)기간이 끝나 사회적응기에 들어간 귀순자들은 마치 제대한 사람이 과거 훈련받던 일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90년대 귀순자 1명을 사례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보호(수용)기간 중에 나타난 심리적 변화과정과 적응양상을 심층분석해 보았다. 보호(수용)기간이라는 것이 귀순자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연구대상이 1명이라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보호(수용)기간 중에 나타나는 귀순자의 심리적 변화를 추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진행하였다. 다만 귀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정보와 면접 자료는 밝히지 않고자 한다.

다음은 귀순 직후부터 신분통제가 해제되기 직전까지 약 8개월간의 귀순자의 심리적 변화양상을 시간별로 정리한 것이다.

< 199*년 *월 *일 귀순 >

1일째: 남쪽에 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

2일째: 간부처럼 보이는 관계기관 선생들이 베푸는 호의가 너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이해가 안 간다. 북한의 당간부와 비교해 보라.

3일째: 나 자신 북한 실정을 잘 모르는데 자꾸 캐물으니 몹시 부담스럽다.

4일째: 북한에서 배반자로 부를 것 생각하니 죄책감을 떨칠 수 없다.

5일째: 북한에 있을 때 남한하면 데모와 최루탄 가스가 떠올랐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대학입시때문에 출근시간을 조정한다고 하니 얼른 이해가 안 간다. 그 정도로 서로 협조하는 사회인가?

6일째: 남한사람들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름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7일째: 목사 설교가 현실감 없게 들린다.

○ 8일째: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도저히 남한현실을 이해하기 힘들어 당혹스럽다.

9일째: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의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 아닌가?

10일째: 통일관련 선생들이 일요일이라고 휴식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아글타글 일하지 않고 놀자는 세상인가?

⑤ 11일째: 자본주의 사회는 놀고 먹는 퇴폐 사회, 도적과 강도가 들끓는 사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회, 암흑의 사회, 바로 남조선이 그런 사회라고 배워오지 않았는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직은 다 모르겠다.

12일째: 모두다 하나님시키시는 대로 하자.

✓ 13일째: 담당선생이 자꾸 「진술」이란 말을 쓰는데, 내가 범죄자란 말인가? 「사업」이란 말을 쓰면 좋을텐데.

14일째: 자유·희망·꿈을 실현하고 대지를 확보하고자 월남했는데, 감혀 있으니 답답하다.

15일째: 치과치료 30년만에 처음해 본다. 의사선생이 참 친절하다.

16일째: 북한에서는 「우리민족제일주의」라고 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선망이 높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정말 초라하게 보인다. 더욱이 서울사람들은 외국인에게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북한과 남한의 판이한 현실인가?

17일째: 시내 나들이 하면서 오늘도 남한사회의 나쁜 것은 안 보인다. 왜 내 눈에는 다 좋게만 보이는가? 이 사회에도 어딘가 어두운 구석이 있을텐데.

① 18일째: 앞으로 「세방」(셋방)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북한에서도 내 집이 있었는데, 죽을 고생해서 남한을 찾아 온 나를

셋방살이를 사키는가?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치민다.]

19일째: 담당선생의 모든 언행에 거부감이 느껴진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20일째: 명절이 되니 부모, 형제, 조카들 생각이 간절하다. 「우리 조상의 집」(보신각)에서 울리는 저 종소리가 바로 순수하고 진실한 우리 민족의 소리 아닌가.

21일째: 양키문화가 판을 치고 민족의 뉘도 문화도 다 말살되어 버린 썩어 빠진 남조선 사회가 아니다. 북한당국의 기만에 분이 솟구친다.

22일째: 남한이 좋아 온 사람인데 나를 죄인 취급하니 너무 분하다.

23일째: 「심문」, 「조사」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 언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24일째: 하나님을 믿더라도 선교사는 되고 싶지 않다. 대신 평신도는 되겠다.

25일째: 남한사회를 몰라 그 속에 섞이지 못하니 텔레비전 보기가 점점 싫어진다.

26일째: 내 처지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것이 주제넘은 것 아닌가? 이런 인사를 받는 사람이 “너 같은 게 인사들” 할 것 같아 두렵다.

① 27일째: 올해는 무슨 동물의 해라고 한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를 믿어야 할까?

28일째

28일째: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여자와 결혼할 때 그 여자가 내 심정을 이해해 줄까? 북에 계신 어머니 마음에 안들텐데. 아예 장가가지 말고 열심히 살며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자.

29일째: 국립묘지에서 참배하면서 짙은 감동을 느낀다. 신분차별없이 모두

한 곳에 묻혀 있는 것을 비롯해 북한의 「대성산렬사릉」, 「애국렬사릉」과 다른 점이 많다.

31일째: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남한의 법규를 철두철미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해 본다.

32일째: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용수철처럼 반발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강아지처럼 순종하며 살 것인가?

34일째: 노래를 실컷 부르고 나니 쌓인 감정이 풀린다.

35일째: 영등포 시장, 롯데 백화점을 구경하다. 외국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별로 놀라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구경하고 나니 그렇지 않다.

36일째: 「우정의 무대」를 보며 어머니 생각에 한참 울다.

37일째: 출근길 걱정하고 그날의 범죄사실을 방송하는 것이 아직도 생소하다.

39일째: 해외 뉴스에 나오는 세계소식을 이해할 수 없다.

40일째: 미국인과 「사업」을 하려고 처음 마주 앉았는데, 조선인민의 철전지원수라는 생각 때문에 적대감을 참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하는데 더 만나보고 나의 인식과 견해를 정리해야겠다.

41일째: 남한사람에 비해 내가 자꾸 초라한 것 같아 마음 속의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

42일째: 명절이 다가오니 고향생각, 어머니 생각에 잠이 안 온다.

43일째: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강연에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나? 북한의 실정, 겨레의 아픔, 남한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말해야겠다.

44일째: 또 미국인과의 「사업」을 하다. 그들이 저지른 「신천만행」을 생각하니 적개심과 복수심이 끓는 것을 참기 어렵다. 미국놈에 대한 복수

심이 솟는다.

46일째: 막상 계북생활수기를 쓰고자 하니 북한 실정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힘들다.

○ 47일째: 경복궁, 역사박물관을 구경하면서 옛날 총독부 시절이 떠올라 일본놈에 대한 복수심이 끓는다. 일본인 관광객에게 사과를 받고 이 곳을 구경시켜주어야 한다. 왜 이곳을 일제침략성을 폭로하는 고발장 소로, 복수모임 결의장으로 활용하지 않는가? 나. 나

48일째: 처음으로 테니스라는 것을 쳤는데 생각보다 매우 힘들다. 남쪽생활도 이렇게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9일째: 내외통신사에 가서 「사업」을 하다. 「심문」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감방죄인을 조사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닌가? 「심문」 대신 「사업」을 쓰면 좋은데. 나보다 먼저 귀순한 사람들을 말하면서 마치 죄인 호명하듯 하는데 과연 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하니 긴장이 된다.

50일째: 교회예배 참석후 점심식사에 모르는 여자분이 음식을 자꾸 집어주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걸까?

51일째: 「사업」하느라 애썼다고 돈을 주는데 받을 수 없다. 응당 내가 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10전도 받을 수 없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든다.

○ 52일째 { 세종호텔에서 일본기자와 만나 「사업」을 하는데, 일본놈이라는 생각이 앞서 제대로 대답도 못한 것 같다.

53일째: 「수용」, 「심문」, 「출소」라는 용어사용에 거부감이 있다.

55일째: 앞으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

56일째: 교회 헌금이라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 58일째: 또 미국인과 「사업」을 하다. 통역하는 사람이 「진술」하라는 바람에 사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말인가?
- 59일째: 1만8천여 명의 시베리아 근로자들에 대해, 그리고 북한사람들에 대해 남쪽 사람들은 너무도 모른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것 같다.
- 60일째: 북한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 62일째: 담당선생의 「통말」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지만, 당분간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로 작정하다. 이것이 전사의 상관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 63일째: 롯데월드와 석천호 등 시내 관광을 하면서 오랜만에 행복을 느낀다. 이 곳들이 바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64일째: 나를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귀순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다.
- 65일째: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다. 5년만 기다리면 되겠지하는 생각이 든다.
- 66일째: 문민시대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온다.
- 67일째: 텔레비전에서 역사극을 보면서 일본놈에 대한 적개심이 끓는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고구려땅'도 되찾아야 할텐데.
- 68일째: 통일을 앞당기려면 군부통치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아무튼 북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 70일째: 남한사회에 와서 제일 큰 실망은 인간들이 의리가 없고 속이려 든다는 것이다. 진정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 71일째: 근무자들의 이중적 태도가 싫다.
- 73일째: 인천시를 구경하고 나니 고향생각이 간절하다.

74일째: 혼자서 그동안의 생활을 총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마음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 좋다.

75일째: 또 미국인과 「사업」을 하면서 거부감이 생겼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보여주기 위해 힘껏 노력하다.

76일째: 무엇보다 사람의 정이 그립다.

77일째: 국민교육헌장 암송이 어렵다.

78일째: 오늘은 북한의 명절이다. 어머니와 고향생각이 절실하다.

79일째: 집안 어른 제삿날이다. 불효의 죄책감을 떨칠 수 없다.

80일째: 조기운동 시간도 안 지켜주는 근무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북한에서 하전사때 생각하며 그냥 삭혀버리다.

91일째: 삼성전자, 현충사, 독립기념관, 민속촌을 구경하고 나서 솔직히 정신이 없다.

92일째: KBS 프로에서 내가 알던 사람을 보니 매우 반갑다. 하루 빨리 자유롭게 되기를 빈다.

93일째: 며칠 후 먼저 귀순한 사람과 면담이 있다고 한다. 그에 대한 북한에서의 평판을 들어서인지 웬지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파렴치범을 내가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 대신 내가 보고 싶은 귀순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사정을 해 봐야겠다.

94일째: 한문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신문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답답하다.

95일째: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자고 다짐해 본다.

96일째: 얼마전 술자리에서 옆에다 여자를 앉히는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여자를 멀리하자고 다짐해 본다. 내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어머니가 고생하실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다.

97일째: 「재산공개」, 「경제회복」, 「실명제」 등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많아 남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98일째: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 때문에 잘 살지 못하게 된다”는 등 남쪽 사람들의 통일염원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미쳐 실망스럽다.

99일째: 미국에 대해 대북한 원유봉쇄정책을 구결하고 있는데, 미국과 같은 외세에 의존해서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통일의 방해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일본의 반통일정책이다.

100일째: 나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다 모른다. 어쨌든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 흡수통일은 있을 수 없고, 이 땅에는 이념의 합철될 때 통일이 될 수 있다.

101일째: 오랜만에 탁구를 실컷 치고나니 몸과 마음이 개운하다.

102일째: 텔레비전에서 본 나와 성이 같은 가수의 꿈을 꾸 후, 어이없게도 동성동본 걱정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흔들린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여자는 남자가 가는 길에 장애물인데 말이다.

103일째: 집생각, 고향생각에 하루종일 우울하다.

104일째: 호적신고를 하고 나서 감회에 젖어 소주를 다섯잔이나 먹다.

105일째: 교회의 큰 행사에 참석하면서 남쪽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아무튼 내가 귀순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것을 결심해 본다.

106일째: 하루종일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친다.

107일째: 장래 희망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다 하루가 다 지나가다.

122일째: 군부대 강연을 하루 두 번씩하는 강행군을 연속해서 하고 나니 몸살 기운이 돈다.

123일째: 부대에서 화장실에서도 경례를 하는 것을 보고 꽤 이상한 행동이

란 생각을 해 본다.

124일째: 남한사람들의 인정은 매우 자기위주라는 것을 차츰 느끼게 된다.
또 개인주의가 심하다는 것을 느낀다.

125일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자기만 믿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

137일째: 12일간 하루 두 번씩하는 군부대 강연을 하면서 남한군인들이 너무 헤이해져 있고, 통일의식도 약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왜 통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지금 미군철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

140일째: 나 혼자 배반했다는 생각에 괴롭다. 이제 후회한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141일째: 어쩌면 담당선생이 나를 훈련시키느라 괴롭힌다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든다.

142일째: 「어버이날」이란 것도 다 있는구나. 어머니 생각에 견딜 수 없다.

143일째: 가나안 농군학교 방문하고 나서 새로운 삶의 자세를 점점해 본다.

144일째: 체육경기에서 남북한이 대결하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 우연히 체육구락부 후배를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어 기쁘면서 착잡하다.

145일째: 담당선생은 내 심정을 그렇게도 모르는가? 내 이미지도 생각해서 발언을 해주면 좋지 않은가? 나의 이미지는 -100이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146일째: “모른다”가 제일 상책인 것을 이제 알 것 같다.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고 남한에 유익한 말만 해야 하는 것이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이다.

147일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148일째: KBS 프로 「주부청문회」에서 간통죄, 이혼을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남북한간의 인식의 차가 크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어쩌 외도가 가능한가? 하물며 자식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외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 149일째: 북한에 두고 ~~원~~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괴롭다. 남한에서 정의롭게 살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 150일째: 숙소를 옮기고 나니 기분이 새롭다.
- 151일째: 통제된 생활의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 이 기간이 바로 사회생활을 위한 소중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자.
- 152일째: 사회에 나가면 통일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때마다 인사를 잊지 말아야겠다. 무엇보다 나를 감시한 것이 아니라 지켜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
- 153일째: 대통령의 군지휘관 접견 뉴스를 보면서 남쪽의 안보의식 해이 지적에 동감하다. 나라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남한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 154일째: 까치소리를 듣고 뭔가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본다.
- 170일째: 남한의 젊은 청년들은 즐기는데 너무 치중하고 있다. 비애국애족이며, 비도덕적이란 생각이 든다.
- 171일째: 귀순자란 신분을 떠나서 남한사람들과 사귀어 보았으면 좋겠다.
- 172일째: 보훈처를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다가 나를 「관리한다」는 말을 듣고, 북한의 「돼지관리공」이란 단어가 연상되어 심한 모욕감을 느끼다.
- 173일째: 보상금, 집값, [✓]대학보장 등 국가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다.
- 174일째: 텔레비전에서 「6.25 음식먹기 운동」을 보고 이상한 운동도 다 있다고 생각한다.
- 190일째: 통일전망대에 가서 북한식구 생각이 나서 한참 울다.

- 191일째: 텔레비전에 출연한 귀순자가 북한 실상 소개하는 태도에서 심한 불쾌감을 느끼다. 북한에서 당하는 아픔의 말을 어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사회자는 꼭 그 자리에서 북에 두고온 가족애기를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가?
- 192일째: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절차를 밟으며 국적을 바꾸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다.
- 193일째: 정부의 통일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른 이해가 안 간다.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하는데 너무 유화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 ☞ 194일째: 북한사회는 김일성 자체가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기에 모든 북한 정치가 철저히 종교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감사하고 따르고 충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목숨은 버려도 수령은 절대로 못버린다는 의식이 강하다. 방법은 인민 대중 자신들이 스스로 알고 나설 때만이 북한 사회의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 195일째: 최근 남한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속의 무궁화 삼천리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할미꽃이 되느냐는 기로에 놓인 것 같다.
- 196일째: 지금까지 남한 사회를 접하면서 느낀 점을 종합해 보면, 우선 남한 통치자들의 통치기술에 실망이 크다. 무엇보다 긍정감화교양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땀흘리고 소박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내세우고 또 그것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이 미약하다.
- 그리고 애 국가정책을, 문민시대를, 신한국창조를 위한 노래, 연극, 춤, 시, 영화, 동요, 웅변 등이 없는가?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보다 연예인이나 특정인들이 대우받고 보도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군인들에 대한 명예심을 높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스러움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고 있

다. 또 학벌위주보다 능력위주가 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도 출신성분이나 학벌위주 사회인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창의력과 창발성이 말살되고 소외된다.

약사는 약사고 한의사는 정확히 한의사인데 왜 결단을 못내리는가? 한약은 한의사밖에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현대과업, 약사들 행위를 보면서 남쪽국민들은 이기심이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

나라사랑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드물다. 노인들이 자식이 있는데도 버려지는 이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퇴폐업소가 많은 이유는?

197일째: KBS의 「시민광장」에서 북한을 거지로 빗댄 귀순자의 발언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다. 나중에 만나면 혼을 내주어야겠다.

198일째: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견해를 들으면서 공격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199일째: 통일은 외과의사가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그런 심정에서 노력해야 한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위해 밤을 지새는 의사, 간호원들의 그 숭고한 인간애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단순히 한민족이기에, 한국토이기에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도 환상적이고 공상적이다.

200일째: 약속은 인간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리인데, 담당선생은 이를 잘 모른다. 어찌보면 담당선생의 말 한마디가 바로 남한에 대한 인상이며 정보인데, 그런 사명의식도 없는 것 같다.

201일째: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싫어서 넘어온 것이지 결코 남한이 잘 산다고 떠난 것은 아니다. 땀흘려 열심히 모두가 같이 일하고 땀흘림의 양에 따라 보수받고 능력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공평한 사회를 찾아 떠나지 않았던가?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자는 남한의 통일방안(서로 체제인정, 서로 개방, 현실에 기초한 총선거)과 88올림픽 TV장면에서 남한국민의 평화롭고 사심없는 웃음에 반해서 떠났던 것이다.

- 210일째: 텔레비전 광고 중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제일이어”가 제일 마음에 든다. 여기에는 깊은 철학과 애국심이 담겨 있다.
- 211일째: 한강공원에서 어린이들의 괴상한 춤대회를 보고 도무지 저런 행사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 212일째: 이국적인 텔레비전 프로제목에 거부감이 앞선다.
- 213일째: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 214일째: 교회에서 고향사람을 만난 후 감정이 북받쳐서 잠을 며칠동안 못 이루다.
- 220일째: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상당히 놀라다.
- 221일째: 술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고서 술을 마신데 대해 자책감이 든다.
- 230일째: 내 집이 마련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쁘다.
- 231일째: 「출소」, 「관리」, 「활용」이란 말을 듣고 또다시 기분이 몹씨 상하다.
- 232일째: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많이 줄었으나, 곧 자유롭게 될 것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기쁘다.
- 239일째: 바깥생활을 하면서 북한사람 망신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를 세삼 다져 본다.
- 240일째: 내일이 「출소」(?)하는 날이다. 앞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상이 보호(수용)기간 중에 나타난 한 귀순자의 심리적 변화과정 및 인식

의 전환과정을 추적한 결과이다. 귀순자 개인의 특성, 보호(수용)환경 및 조건에 따라 보호(수용)기간 중 나타나는 반응은 다양하겠지만, 남한이라는 새 사회에 접하는 탈북귀순자들 대부분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사례연구 대상이 된 귀순자가 보인 특수성을 되도록 배제하면서 보호(수용)기간 중의 적응양상을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무엇보다 죄책감과 외로움에 괴로워 한다.
- ② 탈북전에 형성된 시각에서 남한 사회를 바라본다.
- ③ 탈북전에 형성된 대미·대일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 ④ 탈북전에 형성된 가치관 및 인생관에 의해 새 삶을 설계한다.
- ⑤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 ⑥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즉 언어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크다.
- ⑦ 보호(수용)담당 관련 근무자로부터 받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 ⑧ 방문장소, 면담인사 선정 등 적응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력 또한 크다.
- ⑨ 종교자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종교를 신앙화하지 못하고 있다.

2.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애로사항

보호(수용)기간이 끝난 후 남한사회에 직접 적응하고 있는 귀순자들은 어떤 적응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87년 이후 귀순한 44명의 귀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분야별 적응양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응양상

탈북귀순자들이 새 삶을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먹고 사

의 전환과정을 추적한 결과이다. 귀순자 개인의 특성, 보호(수용)환경 및 조건에 따라 보호(수용)기간 중 나타나는 반응은 다양하겠지만, 남한이라는 새 사회에 접하는 탈북귀순자들 대부분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사례연구 대상이 된 귀순자가 보인 특수성을 되도록 배제하면서 보호(수용)기간 중의 적응양상을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무엇보다 죄책감과 외로움에 괴로워 한다.
- ② 탈북전에 형성된 시각에서 남한 사회를 바라본다.
- ③ 탈북전에 형성된 대미·대일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 ④ 탈북전에 형성된 가치관 및 인생관에 의해 새 삶을 설계한다.
- ⑤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 ⑥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즉 언어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크다.
- ⑦ 보호(수용)담당 관련 근무자로부터 받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 ⑧ 방문장소, 면담인사 선정 등 적응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력 또한 크다.
- ⑨ 종교자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종교를 신앙화하지 못하고 있다.

2.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애로사항

보호(수용)기간이 끝난 후 남한사회에 직접 적응하고 있는 귀순자들은 어떤 적응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87년 이후 귀순한 44명의 귀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분야별 적응양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응양상

탈북귀순자들이 새 삶을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먹고 사

는 데 필요한 경제적 방식의 생소함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살다 온 귀순자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동경과 함께 도전의 장인 것이다.

· 사회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 사회는 땀흘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물어보았다.

응답한 귀순자의 91%가 노력의 보상에 동의한 반면, 9%만이 반드시 동의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응답자들이 노력의 보상에 높은 지지를 나타내는 것은 남한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활에 적극성을 떨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대다수 귀순자들이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하던 탈북전의 의식도 적지 않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응답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견해이다.

“일한 것만큼 가질 수 있었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T 씨)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반이 될 때라야 땀흘린 만큼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힘없는 자는 계속 눌립니다.”(K 씨)

“보상은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C 씨)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이자 단점인 황금만능주의 즉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았다. 황금만능주의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84%가 동의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와는 상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 및 개념을 인식하기 때문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와 함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의 부정적인 단면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돈은 있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G 씨)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B 씨)

“귀순자에게 한국사회에선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며 오로지 돈만 벌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O 씨)

아울러 응답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음의 증언이 그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북한에서는 출신성분으로 인해 풍족한 생활을 하였고, 남한에 와서는 정부 보조금이나 강연료 등으로 인해 귀순 후 5년 동안 돈의 필요성을 전혀 못느꼈었다.”(S 씨)

“돈의 단위가 너무 커 개념이 잡히질 않고, 돈의 필요성을 못느끼며, 또한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잘 모르고 돈이 있을 때는 그 중요성을 몰라 사용에 있어서도 실수를 하였다.”(G 씨)

“돈으로 직접 물건을 산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돈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을 때 과연 이 돈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인지가 큰 의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점에 물건이 없어 국내돈이 거의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K 씨)

“돈 만원의 가치를 보호기간 동안 전혀 몰랐고,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만큼 늦게 적응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H 씨)

“노사분규를 지켜보며 돈을 달라는 요구나 자기 것을 찾아 먹는 행위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조는 필요하고 기업도 살고 종업원도 함께 사는 인식의 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G 씨)

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적응양상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남한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관심이 있어도 제도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로동당의 유일지배 체제 아래에서 당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적응해 왔고, 반대의견은 곧 반체제세력으로 간주되는 정치문화에 익숙해져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남한의 다원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자체가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이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약 70% 가량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대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 “당은 하나만 있는 것이 국민단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K 씨)

✓ “민족의 이익 앞에 개인의 사상은 머리 숙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한의 정치는 당파싸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I 씨)

“집권당이니 밀어주어야지요.”(Y 씨)

“정당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정치는 다 쇼입니다.”(H 씨)

“정당 이름이 너무 거창하고 생소합니다.”(C 씨)

그래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약 27%가 “심어 많았다”, 약 39%가 “보통이었다”, 나머지 약 34%가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적었다”로 답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호기심은 적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선거제도 자체가 생소한 것이 무관심의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에 관한 응답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남한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회이기에 누구를 선택할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Y 씨)

“정당을 선호하지도 않고, 후보자가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관심이 없었습니다.”(M 씨)

“후보자가 다 똑같으니 아무나 찍자고 생각했습니다.”(H 씨)

다. 사회·문화생활에서의 적응실태

(1) 일상생활 전반

먼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와 살면서 북한과 얼마나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남북한의 생활습관 및 풍습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다고 느끼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분의 3이 남북한의 차이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남북한이 풍습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학교 교복이면 충분합니다. 치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짧은 바지, 패인 옷을 입습니다. 메이커 옷이나 제품이 많구요. 같은 상품인데도 이름에서 차이가 납니다.”(G 씨)

“북한은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부식은 오로지 된장, 간장, 시레기 뿐입니다. 쌀밥에 고기국을 희망하나, 죽도 없어 못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무엇이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남한은 조미료를 북한보다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R, C, B 씨 등)

“북한 여성은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남한 여성은 예모가 없고 야한 옷차림이 많으며, 담배피우는 여성이 많은 것을 볼 때 놀랍니다.”(Y 씨)

“북한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합니다. 의리나 우정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불신풍조가 있고, 도와주고 싶어도 경계하는 표정을 보면 정이 싹 가십니다. 한마디로 정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문제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H 씨)

“남한은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는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R 씨)

“북한은 말하는데 매우 거칩니다. 그러나 남한은 부드럽습니다.”(D 씨)

“북한에는 민속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민속적인 것을 중시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얼을 이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D 씨)

“남한은 핵가족 시대로 부모를 거의 외면합니다. 늙으면 소외감을 느끼는데 남 특이 안합니다. 북한은 맏아들은 당연히 부모를 모십니다. 또한 어른의 꾸지람을 당연히 받아들여 어른에 대한 예의가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지요.”(Y 씨)

“북한은 폐쇄사회이고 남한은 개방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안에서 너무나 자유스러워 ‘내가 이래도 되는가?’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C 씨)

“북한에서는 되는대로, 시키는대로, 줄서라 하면 줄서고, 박수쳐라 하면 박수쳤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인민 스스로가 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아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R 씨)

✓ “북한에서는 ‘하는 척’만 하면 되지만, 남한에서는 ‘하는 척’하면 ‘땡땡이다’하는데, 그렇게 이미지가 박히면 사회생활에서는 끝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인정을 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10배, 20배 열심히 뛰어도 성공할까 말까입니다.”(S 씨)

“남북이 살아가는 순리는 같습니다. 오기 전 남한의 제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리 속에 제도적 장치, 법이 있는데, 추구하는 욕구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개척해야 합니다.”(I 씨)

“이곳 사람들의 생활이 다양·복잡하고 개성이 강해 제각각이어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물건 가격이 자율화되어 혼란스럽기도 했지요.”(P 씨)

위 증언들을 통해 남북한의 살아가는 방법과 시각이 매우 다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분야별로 적응양상을 보고자 한다.

(2) 의식주생활

국가중심 배급체제 속에서 생활했던 귀순자들이 새로운 의식주생활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의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3분의 2 정도가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하고, 3분의 1 정도가 「옷의 구입」, 「옷의 세탁」, 「옷의 수선」의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북한에서는 「옷의 구입」자체가 큰 문제였는데, 남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애로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 번 장만하면 계속 입었는데, 남한에서는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옷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렵다.”(Y 씨)

“옷이 다 좋아보여 어떤 것을 골라야 할 지 모르겠어요.”(P 씨)

“다른 친구들이 메이커 옷을 입으니, 나도 따리지 않기 위해 비싸지만 메이커 옷을 사 입습니다.”(R 씨)

“옷 세탁하는 법을 몰라 새로 산 옷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탁하기가 겁납니다.”(K 씨)

식생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현재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용으로는 「음식만들기」, 「주방용품 사용」, 「식품구입」 등을 들었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남자라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북한에서 식생활의 어려움은 「식품구입」자체였다는 지적을 참고한다면 현재 귀순자들이 현격히 달라진 식문화 속에서 적응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응답자들의 지적한 어려움이다.

“음식만들기에 어려움을 느껴 퇴근할 때 집 근처 식당에서 아예 저녁식사를 하고 옵니다.”(J 씨)

“주방기구가 많은데 용도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배치해야 할 지도 모르겠어요.”(R 씨)

“음식만들기가 쉽지 않아 반찬을 자주 구입합니다.”(P 씨)

주생활의 어려움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지적했는데, 그 주내용은 「주택마련」, 「소유권 문제」, 「주변환경」, 「주택의 크기」, 「주택구조」 등이었다. 이 중 「주택마련」은 93년 이후에 귀순한 응답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데 반해, 「주변환경」은 귀순한지 비교적 오래된 사람들의 애로사항이었다.

(3) 언어생활

언어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 보기 위해 “현재 언어문제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응답자의 약 60%가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외래어 사용」, 「다른 의미로 인한 오해」, 「사투리」, 「한자 사용」 등이 주된 이유였다. 「외래어 사용」에 대한 비율 약 41%는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영어라고 지적한 점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언어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다.

“사람들과의 대화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물건을 구입할 때 상품명이나 가격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O 씨)

“일상적인 언어에도 영어가 많아 못알아 듣습니다. 예를 들어 ‘수퍼’가 무엇하는 곳인지 몰랐으나, 들어가 보고 상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Y 씨)

“외래어로 씌여진 간판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D 씨)

“북한에서는 ‘바쁘다’라는 말을 시간이 조급할 때, 짐이 무거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등 다양하게 쓰지만 남한에서는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 같습

니다.”(K 씨)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어떤 문제는 틀리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ㄹ’을 틀리게 썼다고 하셨어요. 제가 북한에서 쓰던 식으로 ‘ㄹ’을 썼는데 말이예요. 북한에서 온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 보면 내 말이 맞다고 했어요.”(R 씨)

“한자를 몰라 신문읽기에 힘들어 하는 귀순자가 많으며 신문의 세로쓰기에도 익숙하지 않다.”(Y 씨)

“귀순자의 말투를 이 곳 사람들이 못알아 듣고 웃음거리가 돼 당황스럽다. 식당문화, 특히 레스토랑의 양식에 익숙하지 않아 곤혹스럽다.”(Y 씨)

“남한에서 너무 한자용어를 많이 써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북에서도 중학교 때부터 1주일에 2시간씩 한문을 배우지만 ‘복덕방’이란 말은 도저히 추측하기 힘들었다. 가옥이나 토지의 사유개념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떡파는 곳’이나 ‘점치는 곳’으로 생각했었다. ‘대포집’이라는 말도 어감이 이상했고, ‘도시락’도 북에서는 곱밥으로 쓴다.”(K 씨)

이상의 증언을 볼 때, 귀순자들은 우선, 외래어가 일상화되어 있는 남한사회의 언어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 체제의 용어 이해에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법과 어휘의 차이 및 북한에서 한자를 배우지 않음으로 인해 신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언어생활 전반에 있어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대인관계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큰 이유를 남쪽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는데, 다음의 증언에서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에는 동정, 협조적이나 점점 갈수록 냉담해짐을 많이 느낍니다.”(H 씨)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난 다음에는 모르는 척 합니다.”(I 씨)

“남국 동포들이 귀순자들에게 거리감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종종 좌절감을 느낍니다. 사람사귀기가 어렵습니다.”(G 씨)

“이 곳 사람들은 남을 생각해 주는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K 씨)

“귀순자들이 정을 주고 받을 곳이 없는 것이 이 곳 생활에서 제일 힘든 점이다.”(H 씨)

“마치 죄를 짓고 내려온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터놓고 사람을 사귀기가 어렵다. 유학생 출신들은 유학기간에 한국학생을 사귀는 것이 들쭉나 귀국 후 처벌이 두려워 귀순한 경우가 많은데 이쪽 기준으로 보자면 죄라고 할 수도 없다.”(Y 씨)

“귀순자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멀리당한다는 느낌이 종종 든다.”(B 씨)

과연 귀순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의 가장 큰 원인이 남한 사람들의 차별의식과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대귀순자 의식조사를 실시해 보아야 하지만, 연구여건상 일단 대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귀순자 의식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조사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를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약 90%를 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우선 귀순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태도를 보인 점이다. 이는 일단 귀순자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둘째는 귀순자들을 북한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문제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부모나 처자식을 두고 넘어올 수 있느냐는 견해도 「문제아」란 시각과 함께 응답자의 약 80% 이상을 차

지했다.

셋째는 약 80%의 학생들이 귀순자들은 보상을 많이 받고 강연료를 많이 받아 몇몇의 사람만 제외하고는 꽤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귀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못 살게 된 몇몇 사람도 받은 돈 관리를 잘못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귀순자의 돈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넷째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없이 넘어올 귀순자들을 모두 지금처럼 대해 줄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과 더 잘해 줘서 통일을 이루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양분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이렇게 답한 학생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귀순자 보호정책의 내용이나 수준을 거의 알지 못하고 조사에 응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이런 조사결과를 남한 국민의 대귀순자 의식으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20대 초반 남한 젊은층의 견해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느낀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대귀순자 의식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욱 확산된다면 탈북귀순자들이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한편, 귀순자들은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한두 번씩 사기를 당한 후 남한 사회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내비치고 있는데, 다음의 증언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외롭기 때문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깝게 다가와서는 ‘곧 갇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 이 사람은 진실로 대하고 있구나 내지는 아!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는 분별이 서지

만 귀순 초기에는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만으로 그를 완전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는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사기당할 뻔한 경우만 3번이나 됩니다. 이제 사람을 아무나 믿지 못하겠습니다.”(H 씨)

“잘 대해 주며 술집에 데려가 술 사주고, 사기치려는 사람 등 곳곳에 유혹이 많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T 씨)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이런 사례가 가끔씩 실리기도 했는데, 다음 사례에서 귀순자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얼마나 남한사회 초년생인지를 잘 알 수 있다.

▶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한 채 보석을 자랑하던 김모씨(48)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6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2개를 훔친 박모씨(21.술집 종업원.전과 5범)를 구속.

박씨는 20일 오후 9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반포동 D룸살롱에서 김씨가 보석을 꺼내 보이며 자랑하자 집에까지 따라가 술에 취한 김씨가 전화를 받는 사이 안주머니에서 1.8캐럿, 1.7캐럿짜리 다이아몬드반지 2개를 훔친 혐의다.

김씨는 88년 4월 북한 대양무역상사 콩고 지사장으로 있을 때 보석상에 2만달러 상당의 일제 전자제품을 주고 이 다이아몬드반지를 대신 받았으며 한 달 뒤인 5월 한국으로 귀순했었다.(『중앙일보』 91.09.27 23면)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김모(35.Y대 경영2)씨를 절도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16일 낮 12시께 귀순자인 같은 학교 4학년 이모(26)씨 등과 술을 마시다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고 물어 이씨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씨의 하숙방에 몰래 들어가 통장과 도장을 훔쳐 1천2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김씨는 77년에 입학했으나 미등록으로 제적당했다가 93년 미등록생 복학조치로 복학했으며, 이씨는 북한에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복무하다 91년 7월 귀순했다.(『한국일보』 95.05.19 29면)

한편, 귀순자들은 귀순자들끼리는 잘 어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 속에 “귀순자 모임에 참석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응답자의 절반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절반은 「참석한다」고 대답했다. 불참 이유도 물어보았는데, 「모임을 모른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 「시간이 없어서」, 「그저」라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증언은 다음과 같다.

“가기 싫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C 씨)

“적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H 씨)

“조직생활이 싫어서 여기 왔는데, 또 조직에 들라구요?”(G 씨)

최근의 한 연구결과는 귀순자들끼리 잘 안 만나는 이유를 첫째, 다른 귀순자들을 만나는 것이 혹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둘째, 서로 처지가 뻘한데 만나도 별 특별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셋째, 서로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에는 서로가 너무 낯설고 잘 모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넷째,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바빠서 북한사람들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라고 밝히면서, 남한에서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귀순자들의 공공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전우택, 1995).

현재 귀순자들의 모임으로는 전체모임으로 「월남동지회」가 있는데, 이는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송의회」와 기무사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통의회」로 나누어져 있다. 송의회는 농민이나 노동자·하전사·유학생 출신들이 속해 있고 회원은 대략 450명 쯤 된다. 이에 비해

40여 명으로 이루어진 「통의회」는 장교와 특수부대 그리고 남파간첩 출신들의 모임이다.

「숭의회」는 2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려 회장을 선출하고 총회가 없는 해에는 산업시찰도 가곤 했는데, 92년 이후 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 때까지 13년 동안 해마다 안기부가 경찰청으로 보내주던 예산 1억3천만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93년 12월 12일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귀순자들에 대한 지원이 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였다(송의호, 1995: 434~435).

이외에도 귀순자들의 공식화된 모임으로 89년 결성된 회원 40여 명의 「월남귀순용사 선교회」, 91년 8월 동유럽에서 귀순한 유학생들이 만든 「동유회」, 92년 10월 최근 귀순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귀순자가 만든 「나라사랑회」, 백두산을 향해 있다는 뜻에서 30대 7명이 만든 「백향회」 및 60년대 말 북한 국적으로 중국에 살다가 귀순한 사람들의 모임인 「충의동지회」 등이 있다.

(5) 직장생활

직장인 24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과 관련된 적응에 관해 알아 보았다. 직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알선해 준 직업이라 아무 생각없이 다니고 있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이런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선한승, 1995).

다음은 직장문제에 대한 귀순자들의 생각이다.

“그냥 왔다갔다하면 월급은 꼬박꼬박 줍니다. 언제까지 이래도 되는 건지 불안하기는 하지만, 편하기는 합니다.”(Y 씨)

“직업을 알선해 줄 때 전공을 살려주지 않아 아쉽다. 한국사회는 ‘눈치가 밥벌이의 절반’이라는 느낌이 든다.”(G 씨)

“시베리아 벌목장 출신들은 지금 훈련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 사회에서 밥벌이를 하려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데는 수긍이 가지만 과거 귀순자들과 대우가 달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 벌목장 출신들도 북에서는 직업이 천차만별이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 적절한 직업을 알선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북한에서 동의사로 일한 귀순자가 직업훈련원에서 공장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단적인 사례다.”(U 씨)

“북에서는 각 분야에서 60세 정도가 되면 원로대접과 함께 실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이 곳은 새 세대가 실무를 장악하기 때문에 고령의 귀순자가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K 씨)

응답자의 80% 이상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경험해 보지 않은 생소한 업무」, 「대인(동료·상사)관계」, 「급여」, 「출퇴근 문제」, 「인사·복리후생 등 회사정책」 등이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장생활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B 씨)

“업무에 있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컴퓨터도 어렵습니다.”(C 씨 외 2인)

“동료들끼리 지나친 경쟁심을 느낍니다.”(J 씨)

“회사에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다만 북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도 적응하기 쉽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처음엔 우대받지만 시간이 흐르면 특별대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생한다.”(C 씨)

“직장생활을 반년 쯤 하다보니 외국어·컴퓨터·회계 등에서 실력차이가 너무 커 새 출발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들어갔다. 직장생활 동안 레저·스포츠 등 문화생활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Y 씨)

(6) 가정생활

가족은 가족 그 자체만으로도 남한 사회 적응의 이유이자 자극이 된다. 조사 대상자 중 가족귀순 형태로 귀순한 5가족(15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가정생활을 물어보았다.

북한에서는 「경제적 곤란」이 가장 큰 가정문제이고 그 다음이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였는데 반해, 남한에 와서는 자유로운 삶 속에서 경제문제도 해결되어 현재 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적응과정에서 부모와의 가치관 차이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견해도 피력되었다. 자녀들은 의생활 문제, 용돈, 종교, 이성교제, 진로문제 등을 놓고 부모와 매체로 불일치를 보인다고 토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살 만한 물건이 없었기에 용돈이 필요없었어요. 간식도 없고, 그저 밥이면 됩니다. 그러나 남한에 오니 보는 것마다 즐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TV로 인해 유명세를 타니까 친구들은 내게 돈이 많은 줄 생각해요. 나도 우쭐대고 싶은데 부모님은 돈 씹씹이가 험프다고 잔소리를 하세요.”(K 씨)

“친구들처럼 메이커 신발을 사고 싶지만 부모님 생각해서 겹으로 입을 못하고 있습니다.”(Y 씨)

어쨌든 가족귀순의 경우 단독귀순자들 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으나, 자녀들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부모보다 높은 적응도를 보이는 가운데, 적응과정에서 부모와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결혼은 귀순자의 남한 사회 적응에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남녀교제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나 막상 결혼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윤여상, 1994, 78-80).

귀순자들이 결혼을 험사리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귀순자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귀순자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자신의 입장

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앞에서 보호 기간 중에 나타난 귀순자의 심리분석을 통해 언급한 바 있듯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여성과 결혼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갓기가 쉽지 않다는 점, 신변에 대한 불안감, 자녀교육에 대한 염려, 그리고 엄청난 혼수비용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귀순자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상대방 집안의 반대도 결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그 실례이다.

“귀순자 J씨는 지난 해 5월 15일 결혼을 했다. 옆집에 사는 같은 연배의 만학도가 그의 처제를 소개해줬다. 「예상대로」 그녀의 부모는 처음부터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북에서 온 사람에게 아끼는 딸을 준다는 것이 꺼림칙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 자기도 「남한청년」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벌목장의 힘든 노동을 이겨낸 의지와 정열로 따님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도 했다. 그렇게하여 어렵게 결혼했다.”(『서울신문』 94.04.16 11면)

(7) 학교생활

최근 학령기의 귀순자들이 잇따라 귀순함에 따라 이들의 국내 학교편입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현재 고교생일 경우 이들의 입학 및 편입문제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및 개정 시행령, 그리고 개정 교육법령에 따라 본인 진술을 토대로 북한에서 받은 수학연한을 법적으로 인정 받은 뒤 안기부와의 협의에 의해 거주지 소속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를 배정받게 되어 있다.(〈부록 3〉 참조)

대학의 경우는 귀순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 역시 국립대학은 전액, 사립대학은 50% 감면해주도록 교육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원외 입학은 귀순자들을 「재외국민」신분으로 대우한데 따른 것인데, 즉 외교관 및 상사주재원 자녀 등에 관한 기존의 특례입학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보호규정은 최초의 편·입학 때만 적용될 뿐 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일반학생들과 똑같은 경쟁을 치러야 한다.

조사대상자 중 2명의 고등학생, 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적응도를 물어보았다. 대부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느라 학교생활이 불만족스럽다든가 아니면 만족스럽다는 것을 가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다.

“교사들이 성의가 없고, 시간 때우기식의 강의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C 씨)

“교사와 학생과의 간격이 넓습니다.”(M 씨)

“북한에서 교원은 직업적인 혁명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신감 없는 태도를 많이 봅니다. 교과서를 보고 읽는 것은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H 씨)

“국제사회에 적응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어 등 외국어를 지나치게 사용합니다. 때론 자신의 권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식한 척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J 씨)

“안원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허심탄화한 토론과 논쟁이 부족합니다.”(D 씨)

“학교에서 친구관계는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따라서 속하지 않은 사람은 고립됩니다.”(A 씨 외 2인)

위 증언을 보면, 응답자들이 현재 학교생활에서 교사 및 교수방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는 북한에서 받은 교사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산주의적 후비세대」를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북한 교사와 견줄 때 귀순학생들 눈에 남한 교사가 매우 무성의하고 사명감 없이 보인 것이다.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응답자 전원이 「영어」라고 답했다. 이는 북한에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선택하여 배우는데 최근까지 거의 러시아어를 선택해 왔기 때문이다. 영어는 화학과목에서 원소 기호를 배울 때 알파벳을 배우는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어 참고서로 매년 4월 15일 김정일 생일마다 증보 발간되는 「4,150제」, 「영어사전 3천자」 등이 있지만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혁명과업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낸 변형어휘가 많아 북한식 영어를 교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구와 소련에서 유학 중 귀순해 대학생활을 하던 두 귀순자가 학교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들에게 비친 남한 대학과 대학생들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직 경험이 짧아 잘 모르겠으나 남한대학에서 느끼는 자유와 자율은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수업분위기 등이 도무지 학교 같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돼 있다. 그리고 한 강의실에 1-2백명씩 앉아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 북에서는 한 강의 수강생이 20명 선으로 교수와 학생이 서로 잘 알고 교류한다.

특히 ‘그만 강의 끝내자’고 교수에게 말하는 학생, 교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나도 담배를 좋아하지만 학교건물 내에서도 아직 피우지 않는다. 또 데모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폭력적이 아닌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 하나같이 편향된 대자보만 난무하고 다른 견해를 찾아볼 수 없는 학교 분위기는 문제다.”

“남한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너무 모르면서도 북한 사람을 불신하는 면이 많아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구 사귀기 위해 합창반에도 가입하는 등 애쓰고 있으나 강의 끝나면 뽀뽀이 흩어지는 관계 속에선 동료 이름 알기도 힘들고 외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남한대학에는 싸움하는 소수‘와 ’침묵하는 다수의 개인’만 있는 것 같다. 다 같은 민족인데 학과에서 2-3명이 몰려다니고 유난히 중고등학교 동문회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 나이든 청소부 아줌마들이 강의실과 화장실을 청소하는데도 마구 더럽히는 학생들을 보면 우리 민족성마저 까먹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구내가 온통 쓰레기투성이니 사회가 지저분한 것도 당연하다.”

“현재 한자사용 등으로 국어나 역사과목에선 고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과 공부를 따라 가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북에도 똑똑한 인재가 많다. 남한 학생들의 통일논의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통일이 되면 과연 이들이 북의 동포들까지 다 먹여살릴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8) 종교생활

종교를 금기시하던 사회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귀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체에 약 70% 정도의 귀순자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과 인식이 남한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의 이중적인 측면을 문제시한 부정적인 견해도 30% 가까이 된다. 한마디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종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이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산에는 경치 좋은 곳마다 절이 있고, 성당도 있다. 그 숫자를 보면 남쪽에 죄짓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나 신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다.”(김용, 1993a: 56)

조사 결과 「개신교」 16명, 「천주교」 9명, 「불교」 2명으로 나타났는데, 종교를 갖게 된 계기는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의 삶에서 종교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약 52%로 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밖에 「친지 권유」가 약 26%, 「스스로 결정」이 약 19%로 나타났다.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종교인이었고, 그 분께 대한 고마움으로 인해서 종교를 갖게 되었다.”(Y 씨 외 5인)

“남한 정착과정에서 종교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M 씨)

그리고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연령, 학력, 귀순시기에 관계없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를 「마음의 안정」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안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귀순자들의 종교에 대한 증언이다.

“북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믿습니다.”(I 씨)

“죄책감과 외로움을 종교에 의지합니다.”(K 씨)

“처음에는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았던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영적인 편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J 씨)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A 씨)

또한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은 종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 반면, 약 60%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려움의 내용은 「나태한 신앙생활」, 「신앙의 회의」, 「목회자의 불성실한 태도」, 「강요에 의한 선교방법」, 「교회의 부패·타락」, 「시간부족」 등이다. 다음은 응답자들의 견해이다.

“종교를 갖고 있지만 솔직히 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O 씨 외 3인)

“남한의 종교인들은 우리가 예배보는 것만으로 우선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갑자기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 스스로 느끼며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H 씨 외 2인)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는 약 50% 가량이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대답했고, 약 25%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했으며, 나머지는 「북한에서 받은 종교 교육 때문」, 「현재의 종교계는 거부감을 줄 정도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 등으로 답했다.

한편,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를 믿는 귀순자가 월등 많은 이유는 우선 귀순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교활동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개신교 신자가 된 귀순자들의 모임인 「월남귀순용사 선교회」가 그 대표적인 활동단체이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귀순한 사람 가운데 75—80%가 기독교에 귀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귀순자들이 환경변화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절대자를 향한 의존감」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귀순자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얼마간 감시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교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 종교단체는 벌목공 등 북한탈출동포돕기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귀순자들이 남한에서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교회 1인」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경제적 지원과 복음전파를 병행하는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즉, 모든 교회가 귀순자 한 사람씩과 자매결연을 맺어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키는 등 남한 사회에 쉽게 적응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귀순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응기간, 적응시 어려웠던 집, 현생활수준 및 직업, 가족활동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펴나가고 있다.

또 다른 개신교 연합단체는 1천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탈북귀순자 10명씩 맡고 그 이하의 교회는 신청교회와 가정에 우선 배정키로 한다면 전국 교회가

자매결연사업에 동참할 경우 1년에 약 3천 명의 탈북귀순동포들을 보살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하여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을 돕자는 민간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이같은 움직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94년에 발족한 「북한탈출동포돕기운동본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 주로 탈북동포들의 정착 및 적응을 돕는데 중점을 둔 단체도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환경 비정부기구 한국본부」,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주부교실중앙회」, 「녹색어머니회」, 「야생동물보호협회」, 「한국세차협회」 등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자유의 새살림지원 범국민운동본부」가 그것이다.

(9) 기타 사회·문화생활

다음으로 교통·통신의 이용, 의료기관 이용, 그리고 여가생활 및 문화생활 등을 영위하면서 귀순자들은 어떤 적응양상을 나타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통수단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보다 「지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차량부족으로 인한 「연착 및 연발현상」이었는데, 남한에서는 지리와 노선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라고 귀순자들은 답하고 있다.

“연락이 와서 어디로 오라고 하는데, 첫째 여기가 어디지 모를 뿐 아니라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통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L 씨)

그 다음은 남한 사람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교통 무질서」 및 「교통체증」, 「요금횡포」, 「불친절」 등이었다.

전화, 전보,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했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이용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을 첫째로 들었는데, 이는 북한에서 전화 등 통신수단을 사용했던 경험이 적었다는 데 큰 원인이 있지만, 남한 통신수단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화되어 쉽게 이용방법을 숙지 하기 어려운 데도 원인이 있다.

응답자의 구체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전화기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오직 받고 거는 것 외에는 이용할 줄 모릅니다.”(K 씨)

“우체통에 넣는 곳이 두 개인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왔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궁리궁리 하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 우체국에 가져갔더니 환불받는 증서라고 하더군요. 또 한번은 무슨 증서가 왔는데,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알아 보았더니 세금을 낸 용지였다고 했어요. 하마트면 한 번 더 세금을 낼 뻔 했었지요.”(Y 씨)

의료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및 수납 등 진료절차」, 「의료비 부담」의 순으로 대답했다. 이외에 「의료진의 불친절」, 「돈벌이 위주의 병원 운영」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4분의 1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에서는 「약품부족」으로 암거래로 약을 구입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지만 남한에서는 그런 데에 신경을 전혀 쓸 필요가 없어 편하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상치료제인데 반해 남한에서는 의료보험제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라는 것이 매우 생소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남한의 상이한 의료체계에서 오는 애로사항이다. 다음은 의료생활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애로사항이다.

“약 이름이나 용도를 모르겠어요.”(Y 씨)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K 씨)

“환자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느낌이 듭니다.”(M 씨 외 3인)

“의료진의 무성의한 태도가 자주 느껴집니다.”(J 씨)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의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귀순자들의 여가 생활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된 사회에서 엄격한 조직생활을 해온 귀순자들에게는 여가 생활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는 이동이 자유롭고 주말·휴일과 평일의 구분이 분명하여 우선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끼고 통제를 안하니깐 좋습니다.”(Y 씨)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에 여가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H 씨)

그리고 귀순자들은 여가 생활을 누리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의 자유로운 생활환경과 귀순자들의 자유를 즐기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귀순자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로는 여행, 등산, 낚시, 외식, 수영, 애완동물 사육과 분재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TV 시청과 가정에서의 휴식도 상당한 정도로 나타났다.

귀순자들은 문화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무엇보다 「시간 부족」과 「경제 사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영화, 연극, 박물관, 미술전시회 등이 언제 어디서 상영되고 개최되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시간이 부족하고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아직 지리가 익숙하지 않고 경제 사정 및 개인의 특성상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생활을 하더라도 우선 돈이 너무 아깝고, 문화 자체가 생소해 이해가 가지 않고, 입장권을 예매하는 방법도 몰라, 응답자의 적지 않은 수는 「TV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다른 것을 즐기기 보다 수도에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북한 사람들은 수도인 평양에 가 보는 것을 평생 소원 중의 하나로 생각하지요. 따라서 남한의 수도인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합니다.”(K 씨)

이상에서 탈북귀순자들이 남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 장에서 논의한 다양한 적응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적응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적응문제의 범주를 정리하고자 한다.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3학년에 러시아어 회화를 곧잘하는 서른한 살의 만학도가 있다. 이름은 장 0 0. 지난 91년 러시아의 비르비잔에 있는 북한 벌목장을 탈출, 헝가리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귀순한 북한의 벌목노동자 출신이다.

장씨는 북한에 있을 때 신의주 사범학교에서 트럼본을 전공한 음악도였으며, 큰 형이 도당지부에서 일하는 성분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그 역시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행을 선택했고 과중한 노동과 북한 사회에 대한 절망감에서 자유를 찾아 벌목장을 탈출했다. 탈출순간부터 서울에 오기를 신앙처럼 갈구했지만 서울에서의 삶이 그에게 희망만을 주고 있지는 않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 북한에서 듣던 것과 정반대의 얘기들, 지하철을 갈아타고,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증권이 무엇인가를 몰라 대화에 끼지 못하고. 이 모든 달라진 환경이 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이따금씩 떠오르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얼굴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도 장씨를 괴롭게 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92년 스스로 희망한대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고는 대학에서만 만난 이른바 「신세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느꼈다. 한결같이 자신감에 넘친 표정, 험란한 옷차림, 기름진 얼굴, 거리낌 없는 감정 표현. 아직

도 별목장에서 걸린 동상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는 장씨는 「내가 과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릴 수 있을까」하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강의가 끝난 뒤 학우들과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별목장 생활과 탈출경로를 추억거리로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좀체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쩌다 학우들과 어울릴 시간이 있더라도 그들은 별목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장씨에게 묻는 것은 주로 「러시아에 유학가면 어느 학교가 좋겠느냐」, 「러시아의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냐」, 「모스크바에서 하숙집을 구할 수 있느냐」는 등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문제들이었다.

그런 날들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장씨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부천에서 초만원의 전철을 타고 학교에 다니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별목장 탈출자를 포함해 북한에서 건너온 귀순동포 가운데서는 가장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게 됐다.

그런 장씨조차도 「서울생활에 아직 반도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해 5월 15일 결혼을 했다. 옆집에 사는 같은 연배의 만학도가 그의 처제를 소개해줬다. 「예상대로」 그녀의 부모는 처음부터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북에서 온 사람에게 아끼는 딸을 준다는 것이 꺼림칙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 자기도 「남한청년」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별목장의 힘든 노동을 이겨낸 의지와 정열로 따님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도 했다.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지만 가장노릇하기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선 생활비가 걱정이었다. 학비는 일단 연세대측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한숨돌릴 수 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천에 전세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지원은 끝이었던 것이다.

지난 해 6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으로 개

편됐다. 귀순자에 대해 「평생보장」을 약속하던 냉전시대적인 전시용 보상제도는 사라진 것이다.

장씨는 현재 이곳 저곳에서 요청해오는 강연회의 연사로 나가는 강연비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별목장 시절의 얘기를 담은 「울음보가 터진 남자」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곳 저곳 강연회에 나가다 보니 수업에 충실할 수가 없었다. 특히 지난 학기에는 성적이 무척 저조했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대가 없이 장씨를 도와주지는 않는다.

장씨의 꿈은 학교를 졸업한 뒤 무역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다. 직장을 얻는 과정에서 다른 학우들과 똑같은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것 또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별목장 탈출자를 포함,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가 5백4명이나 된다. 이들은 친목회를 만들어 해마다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등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술주정뱅이로 전락한 사람까지 다양한 삶을 보이고 있다. 장씨는 이에 대해 「북한사회든 남한사회든 어디서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종합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귀순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적응실태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귀순자들의 「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통일성취단계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고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했으며, 내용분석 방법을 통한 귀순자들의 수기 분석도 시도했으며, 귀순자들에 대한 남한 대학생들의 의식 조사도 병행했다. 그리고 귀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수 없는 현실과 연구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그동안 해당시기까지의 귀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기존 연구와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관련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였다.

귀순자들의 적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파악된 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예비지식과 정보가 없어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주로 귀순 초기에 겪는 어려움인데 지리에 익숙치 못하고, 버스 노선도 모르고, 지하철 타는 법도 모르고, 상식적인 물건값도 모르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사회의 초년생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둘째, 언어문제로 겪는 곤란이다. 언어로 인한 곤란도 여러 차원의 문제로 귀순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영어 및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남한에서 상용하고 있는 전문용어를 이해 못하는 것, 한자를 해독 못하는 것, 이북말씨로 인해 오해받거나 웃음감이 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이는 주로 북한의 집단주의 사회와 남한의 개인주의 사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북한에서 교육받고 살면서 몸에 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남한 사회의 그것과 다름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이로 인해 귀순자들은 외로움, 그리움, 소외감, 열등의식 등을 느끼게 되어 미적응 및 부적응 양상들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가치관 및 도덕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달라 받게 되는 혼란, 돈에 대한 가치인식의 미정립으로 인한 혼란, 단독귀순으로 인한 죄책감,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차별의식에 대한 지나친 반응, 국가 또는 기관의존적인 소극성 등이 그 대표적인 양상이다.

다섯째, 경제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귀순자 지원정책이 계속 바뀜으로써 정착금이 줄어든 결과 최근 귀순한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여섯째, 귀순자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 냉정함, 경멸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다. 이 현상은 최근 귀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 문제가 체제경쟁의 이념적 차원을 벗어나면서 더 질게 나타나고 있는데,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곱째,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지적 열등감 및 사회적 지위 하락 역시 귀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응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적응상의 어려움과 곤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했지만, 적응상의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귀순자 자신과 귀순자를 둘러싼 환경에 있다.

귀순 후 문화적 충격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북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회의에 빠져 있거나 소극적인 생활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만큼 적응 기간만 늘어나게 된다. 설문 조사 및 면접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귀순자들의 대부분은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은폐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남한 주민들의 태도가 귀순자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탓일 수도 있으나, 신분 노출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꺼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내 성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내 스스로 성격을 고쳐 나가는 수밖에 없다.”(김현희, 1992: 255)고 한 귀순자의 말처럼 귀순자들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남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이 요구된다.

귀순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남한 주민의 귀순자들에 대한 태도와 정부의 귀순자 지원정책이다.

한 귀순자가 “남한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 나라에 와서 살 자격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김용, 1993a: 1993)라고 술회한 것처럼 남한 주민의 귀순자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 때 이들은 더욱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귀순자들은 자신에 대한 동료의식의 표명에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의 남한 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기준으로 귀순자들을 대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주민의 생활을 척도로 삼아 귀순자들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여기서 귀순자들은 대체로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비우호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문제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귀순자들의 의식구조를 남한 주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앞당겨 질 수 있으며, 통일성취

과정에서도 그만큼 남북한 주민간의 부작용을 덜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귀순자를 둘러싸고 있는 또다른 환경적 요소는 정부의 귀순자 지원정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귀순자들에게 정착금과 보상금 그리고 직업알선, 주택마련, 의료혜택 등 다분히 특혜의 성격을 띤 정책을 운영해왔다. 최근들어 지원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본질적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 귀순자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불만을 받게 되어 지원은 해주고 욕만 얻어먹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귀순자 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귀순자들에게 일시적인 보상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또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직업 알선은 오히려 적응에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충분한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직업훈련 또한 북한에서의 전직을 고려하고 본인의 희망을 충분히 감안한 후 실시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서로 다른 체제에 적응한다는 것은 단기간 지원이나 교육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귀순자들에 대한 물질적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심리적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도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서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동독 이주민 정책으로 인해 외형적인 사회적응에는 일단 성공했으나, 사회심리적 적응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지적되고 있는 데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충분한 시간적 요인은 물론이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정책과 남한 주민의 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귀순자 자신의 적응하려는 의지가 결합되어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귀순자 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개발에 참고할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주교재는 무엇보다 남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빠른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귀순자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혼란을 적게 겪고 적응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한 사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가치체제를 척도로 해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지를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어떤 준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것이 허용되는 되는 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살아왔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도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너무 많은 비중이 두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또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 귀순자들 중에서도 적임자를 선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연수원 내에 이를 전담할 전문운영부서 및 교육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귀순자 적응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남한 주민들의 대북한인식 및 의식구조를 통일준비 차원에서 전환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

이는 귀순자 적응 목적 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일」을 위함이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을 폄하하거나 경멸하는 오락용 코메디물은 방송프로그램에서 추방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북한주제 오락용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된다면 앞으로

남한 주민들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우월감을 갖고 북한 주민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람의 통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귀순자의 대국민 이미지를 생각해 상업적 목적으로 귀순자의 눈물을 이용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방영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귀순자의 부적응 사례를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적지 않은 귀순자들이 적응 과정에서 언론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다섯째,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생활을 위한 안내서(GUIDE BOOK)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귀순자 적응에 필요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남한으로 내려올 경우 「한국형 생활지침서」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I. 국내 문헌

1. 귀순자 수기

- 강명도. 1995.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일보사.
- 강봉학. 1995. 『원수의 나라로』. 서울: 국민일보사.
- 강철환·안혁. 1993a. 『대왕의 제전』(1). 서울: 향실.
- _____. 1993b. 『대왕의 제전』(2). 서울: 향실.
- _____. 1993c. 『대왕의 제전』(3). 서울: 향실.
- 고영환. 1992. 『평양 25서』. 서울: 고려원.
- 곽병규. 1993a. 『시베리아 아리랑』(상). 서울: 삼신각.
- _____. 1993b. 『시베리아 아리랑』(하). 서울: 삼신각.
- 김군태 편. 1993. 『안경없는 군대 이야기』. 서울: 의암.
- 김광호. 1990a. 『광호의 일기』(제1권). 서울: 신원문화사.
- 김광호. 1990b. 『광호의 일기』(제2권). 서울: 신원문화사.
- 김광호. 1990c. 『광호의 일기』(제3권). 서울: 신원문화사.
- 김신조. 1994.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서울: 동아출판사.
- 김영성. 1995. 『오, 수령님 해도 너무 합니다』. 서울: 조선일보사.
- 김 용. 1993a. 『머리를 빠는 남자』. 서울: 자작나무.
- _____. 1993b. 『빨래하는 남자』. 서울: 자작나무.
- 김지일. 1992.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서울: 고려원.
- 김현희. 1992. 『사랑을 느낄때면 눈물을 흘립니다』. 서울: 고려원.

- _____. 1991a.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제1부). 서울: 고려원.
- _____. 1991.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제2부). 서울: 고려원.
- 문용수. 1991. 『마지막 선택』. 서울: 하나로.
- 안 혁. 1994. 『네가 남이냐 내가 남이냐』. 서울: 오대양출판사.
- 여만철 외. 1995. 『와 헛바쿠를 돕네까?』. 서울: 다나.
- 장기홍. 1993. 『울음보가 터진 남자』(①). 서울: 성심도서.
- _____. 1994. 『울음보가 터진 남자』(②). 서울: 성심도서.
- 전철우. 1995. 『나는 행복하지 않다』. 서울: 응진출판.
- _____. 1994. 『평양 놀새 서울 오렌지』. 서울: 자유시대사.
- 한성호 외. 1994. 『초상집이라 해서 초상화 그리는 줄 알았더니』. 서울: 다나.

2. 단행본

- 김국신·김도태·여인곤·황병덕. 1994a.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통일』(1). 서울: 한울.
- _____. 1994b.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통일』(2). 서울: 한울.
- 김사업 역. 1994. 『생활적응을 위한 심리학』. 서울: 문음사.
- 남북문제연구소. 1994. 『탈북자가 증언하는 북한의 현실』.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 민병천. 1980.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서울: 국토통일원.
- 북한문제연구소. 1993. 『체험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의 현실』.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 서병철·전경수. 1995.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재진. 1995.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 선한승. 1994. 『북한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서울: 공보처.
- _____. 1995.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안계춘. 1980.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결과의 재분석』. 서울: 국토통일원.
- 양호민 외. 1992.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서울: 나눔.
- 이경훈·이용숙. 1994. 『통일, 그날 이후』. 서울: 길벗.
- 이문웅. 1989.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체제변화 실태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 이병관. 1995. 『어, 그래?』. 서울: 새로운사람들.
- 이상우. 1995. 『함께 사는 통일』. 증보판, 서울: 나눔.
- 이학로 역. 1994. 『헤이, 오씨 안녕, 베씨』. 서울: 푸른나무.
- 최성철 편. 1995. 『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 통일원. 1992. 『대만·중국간 교류관계법규집』. 서울: 통일원.
- _____. 1994a.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 통일원.
- _____. 1994b.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서울: 통일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4. 『내가 받은 북한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 논문

- 고태우. 1994. “월남 귀순자 현장 경험사례”,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광일. 1991. “해외동포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제10호.
- 김구섭. 1994. “북한 대량난민 발생 가능성과 동화정책 방향”, 국방부 제3회 정책발전 세미나 발표논문.
- 김상균. 1994. “점검과 지향: 우리의 수용태세와 장기방안”, 『북한 탈출동포

-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김영수. 1992. “북한의 정치문화: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 _____. 1993.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본 북한체제특성과 변화가능성”, 『동아연구』, 제26집.
- _____. 1994.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동아시아연구논총』, 제5집(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김응섭. 1989. “해외유학생에서 집단탈출까지”, 『북한』 (1989년 12월호).
- 문용린. 1993. “통일지향적 가치체계 형성방안 모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경제 연구실 편,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민성길·전우택. 1995. “‘사람의 통일’ --- 정신의학적 접근”, 『통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 배재식. 1994. “망명(난민)과 귀순”, 『자유공론』 (1994년 5월호).
- 백충현. 1994. “자성과 모색: 국제법과 인권의 조명”, 『북한 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서병철. 1995. “서독의 동독 귀순자 수용정책”, 『월간 중앙』 (1995년 3월호).
- 서재진. 1993. “남북한 현존 가치체계의 갈등양상 진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경제연구실 편,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성영신 외, 1993. “남북한의 경제 심리 비교 — 귀순자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한국심리학회,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1993년도 통일문제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 송의호. 1995. “귀순자들의 내면세계 그리고 남한사회수업”, 『월간 중앙』 (1995년 3월호).

- 신의진·이호영·이만홍. 1994. “중국 연변자치주 조선족의 문화이입정도에 따른 정신건강 비교”, 이호영·신승철·이동근, 『연변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서울: 토담.
- √윤여상. 1994.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영·이만홍·이동근. 1994. “중국 연변자치주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신질환에 관한 연구(Ⅰ)”, 이호영·신승철·이동근, 『연변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서울: 토담.
- √전우택. 1995.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 통일원 95년도 연구용역과제.
- √정석홍. 1984.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실태 - 귀순자 조사중심,” 『통일문제연구』 (목포대 통일문제연구소).
- 정영국. 1994a. “통일은 ‘한반도의 기적’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공성진 외, 『미리 가본 통일한국』. 서울: 동화출판사.
- _____. 1994b. “‘땅의 통일’에서 ‘사람의 통일’로,” 공성진 외, 『미리 가본 통일한국』. 서울: 동화출판사.
- _____. 1994c. “통일 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공성진 외, 『미리 가본 통일한국』. 서울: 동화출판사. 조혜정. 1995. “‘남한’과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통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4. 기타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잡지: 『뉴스메이커』, 『북

한』, 『월간중앙』, 『자유공론』, 『통일한국』

II. 국 외 문 헌

1. 단행본

Lazarus, P. S. 1967. *Patterns of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ew York: Macgrow Hill Book.

Shaffer, H. F. 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2. 논문

Eberstadt, N. 1993. "Perilous Road to Reunification," *Foreign Affairs*, Vol.
72, No.1.

Grinker, R. 1995. "The Impossible Real: The Ambivalent Search for Korean Unification," a paper presented at "Transnational Korea: Division and Diaspora,"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April 13-16.

[부록 1]

귀순자 사회적응실태 면접조사 질문내용

1. 기초질문

- 1) 성별, 연령, 교육정도
- 2) 가족관계 및 결혼여부
- 3)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 4)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북한에서 살던 곳은?
- 5) 귀순 경로 및 동기

2.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질문

- 1)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등 일상생활 시간계획
- 2) 하루 텔레비전 시청시간,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싫어하는 프로그램
- 3) 주말 활용 및 명절 활용
- 4) 병원 및 약국 활용 빈도
- 5) 종교생활 여부
- 6) 현재 주거생활, 식생활, 의생활
- 7) 생활비 지출
- 8) 외식의 빈도
- 9)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의견
- 10) 저축 유형 및 채무/채권관계

3. 남한사회 적응실태에 관한 질문

- 1) 가정생활
 - 현재 가족의 구성은?
 - 현재의 가장 큰 고민은?
 - 세대차이에 대한 견해는?

— 가정생활에 대한 바램은?

2) 학교생활

-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 어떤 점이 제일 어렵고 힘든가?
- 귀순자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는?
- 어떤 직업을 택하고 싶은가? 그 가능성은?

3) 직장생활

-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 직장생활의 분위기는?
- 현재의 월급(보수)에 만족하고 있는가?
-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귀순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운 일은?)
- 직업을 바꾸고 싶은가? 만약 바꾼다면 하고 싶은 일은?

4) 기타 사회생활

- 친구관계
- 이웃관계
- 귀순자 모임에 참여 여부
- 언어생활: 영어와 한자의 이해
- 운전면허 소지 여부
- 컴퓨터 및 (정보)통신
- 신문 구독 (구독 종류, 선호하는 기사의 종류)
- 운동경기: 프로야구/프로축구 및 기타
- 영화관 방문 빈도
- 건강 유지 비법

4. 대남한관에 대한 질문

- 1) 남북한의 생활습관 및 풍습의 유사점과 상이점
- 2) 종교에 대한 견해
- 3)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견해(돈에 대한 견해)
- 4)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 5) 남한 청소년에 대한 견해(X세대에 대한 견해)
- 6) 남한 대중음악에 대한 견해
- 7) 남한 TV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 8) 남한 정치현황에 대한 견해/ 대통령에 대한 시각
- 9) 선거 참여 여부 및 선거운동에 대한 견해
- 10)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쌀문제, 핵문제, 통일정책 등)

5.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의 의견 및 희망사항

- 1) 남한정부의 귀순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바람
- 2)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의견 및 바람
- 3)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 및 바람

[부록 2]

「귀순북한동포 보호법」(1993. 6. 11법률 제4568호 전문 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의 정착을 돕는 한편, 이들이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호대상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이하 “귀순북한동포”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보호신청 및 결정 등) ①귀순북한동포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가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귀순북한동포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조 (정착금 등의 지급) ①귀순북한동포에 대하여는 그 정착여건과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귀순북한동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외에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제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과 보로금의 금액, 등급의 기준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 (특별임용) ①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귀순북한동포에 대하여는 귀순하기 전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군의 계급에 임용할 수

있다.

②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귀순 북한동포에 대하여는 귀순하기 전의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계급에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순북한동포로서 국가이익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귀순하기 전의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임용할 수 있다.

제 6 조 (생활보호) 귀순북한동포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 7 조 (주거지원) 귀순북한동포 에 대하여는 국가이익에 이바지한 정도와 연령·세대구성 및 그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8 조 (취업알선) ①귀순북한동포에 대하여는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의 대상범위·알선절차 기타 취업알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교육보조) ①귀순북한동포에 대하여는 교육보호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의 대상범위·보호절차 기타 교육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의료보호) 귀순북한동포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 (취적의 특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귀순북한동포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정서 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⑤이 법에 의한 취적허가, 취적허가서 등본의 송부, 호적의 편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이 법 보호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받을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3조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 ①귀순북한동포에 대한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여부
2.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의 제외여부
3. 기타 귀순북한동포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알아보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 ①귀순북한동포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순북한동포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보호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급받은 정착금 또는 보로금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귀순용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귀순복한동포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보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상금·특별보상금·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 4 조 (주택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구정에 의하여 주택을 제공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제공한다.

제 5 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행한다.

제 6 조 (직장알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을 알선한다.

제 7 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자녀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본칙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 8 조 (양로·양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양로·양육보호시설을 퇴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양육보호를 행한다.

제 9 조 (월남귀순용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월남귀순용사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귀순복한동포후원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

에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으로 한다.

②보훈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적용 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적용 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④의료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 하고, 동항 제 6 호를 제 7 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부록 3]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1993. 12. 11 대통령령 제14019호 전문개정)(개정 1994. 9. 9 대통령령 제14337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호의 신청)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보호대상자의 결정 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보호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인과 그가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등록) 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보호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5 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이하 “월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기본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 1 급(본인외에 동거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

나. 제 2 급(본인외에 동거가족이 1인인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30배 상당액다.

다. 제 3 급(본인외에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20배 상당

액

2. 가산금은 귀순북한동포 본인 및 동거가족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월 최저임금액의 60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위원회의 심의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 9. 9]

제 6 조 (보로금의 지급 및 기준) ①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순북한동포가 제공한 정보 또는 장비의 종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군함, 전투폭격기 : 황금 10,000그램 이상 20,000그램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2. 전차, 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황금 500그램 이상 5,000그램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3. 포, 기관총, 소총류 : 황금 10그램 이상 500그램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4. 무전기 : 황금 10그램 이상 30그램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5. 재화 : 시가에 상당한 금액
 6. 정보 : 황금 500그램 이상 20,000그램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 ②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 7 조 (주거지원)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에게 주거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순북한동포 본인의 연령, 세대구성과 그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4. 9.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귀순북한동포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우선분양 또는 우선임대를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취업알선)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을 취업능력이 있는 귀순 북한동포 본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2.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④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업요청이 있을 경우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범위안에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직종이 별도의 자격 또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교육보호)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는 귀순북한동포 본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교육보호의 범위는 수학능력 등에 따라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까지로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한다. 다만, 사립의 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국고가 부담한다.

③제1항의 교육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보호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 교육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범죄의 종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제5조·제9조·제12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4. 9. 9>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경제기획원장관·통일원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총무처장관·국가안전기획부장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경찰청장이 소속치안감 또는 경무관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인
3.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타 심의사항)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타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등급 및 등급별 수준
2.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지급여부 및 그 수준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여부와 지원방법 및 그 수준

제1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보호신청이 있거나 제13조의 구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타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소속 4급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4. 9. 9]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4. 9. 9]부 칙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9. 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한다.

[부록 4]

[독일인의 서독지역에서의 긴급수용에 관한 법](Gesetz Ue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1950. 8)

제 1 조

- (1) 소련점령지역이나 베를린 소련점령지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독일국적자와 독일 공민권 소지자는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역내에서 별도 허가없이 체류할 수는 있지만, 항구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특별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서독지역에서 통요되는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2) 현존하는 육체적 위해, 생명의 위협, 개인의 자유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존재하거나, 그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1)항에서 언급한 지역을 떠나야만 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제1조에서 언급된 탈출자들은 특정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거주허가증 발급에 대해서는 수용위원회(Aufnahmeausschuss)가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제1조 (2)가 규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조

수용위원회의 거주허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청원심사위원회(Beschwerdeausschuss)에 청원제기가 가능하며, 동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한다.

제 4 조

연방정부는 수용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수용절차와 수용자들의 각 지역분배 및 거주허가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한다.

제 5 조

연방정부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청이 제2조에 따라 수용이 결정된 자들의 첫 번째 주민등록지가 될 주(Land)를 결정한다. 이 때 거주지가 될 주의 경제적인 사정이 고려된다. 각 주는 이들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수용자들의 거주지는 이

들의 가족관계, 재정형편,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제 6 조

연방정부는 이들 수용자를 각 주에 배분함에 있어 기존 망명자나 실항민들로 인해 각 주가 안고 있는 부담이 공평하게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제 7 조

수용자들의 유입으로 각 주에 발생된 부담분의 일부는 기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이 부담한다.

제 8 조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 실항민성 장관

[부록 5]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탈출자에 대한 서독정착을 위한 지침서(1991. 1 기준)

* 이 지침서는 연방내무성이 발간한 동독지역으로부터 이주민·탈출자를 위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원호·정착지원 조치를 알기 쉽게 해설한 것인데, 이 책은 정착증명서를 발부하는 정착관할부서(Bundesaufnahmestelle)가 있는 기센(Giessen)이나 서베를린에서 이주민·탈출자들에게 생활지침서로 배부됨.

1. 정착(수용)

독일(서독을 지칭) 시민과 독일민족인 사람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할 경우, 이들은 정착(수용)법(Aufnahmegesetz) 제1조에 의한 신청절차를 거쳐 정착(수용)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 증명서 없이는 이주자들은 그들을 위한 특정지원과 혜택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정착증명서는 정착관할부서(Giessen과 베를린의 Bundesaufnahmestelle)에서 발급되는 바, 직접 방문내지는 서면으로 신청된다.

2. 임시 생계보조금

이주자들은 정착관할 부서에 정착증명서를 제출하여 일회에 한해 일인당 200 DM의 임시 생계보조금을 받는다.

3. 가족합류

이주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동독이주 당국에 이주 신청을 하였거나 그럴 계획이 있을 경우, 이들은 서독 연방내독관계성이나 서베를린 주재 담당변호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할 수 있다.

4. 시민권

동독시민은 원칙적으로 독일 시민권을 소지한다. 이주로 인하여 동독시민권을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이는 이주자의 독일시민권 소지 원칙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서독에서의 새로운 국적취득행위는 불필요하다.

5. 신고 - 신분증

정착절차를 거쳐 새로운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이주자는 1주일 이내에 주거지역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시 출생증명서와 여권사진을 지참하여 신분증 발급을 신청하는데, 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는 구청직원과 필요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동독 신분증과 여권은 구청 보관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전면허증

동독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은 서독에서도 통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주 일년 후까지는 서독법 규정의 운전면허를 새로이 취득해야 한다. 이는 소정 구비조건을 갖추어 시험을 치루지 않고 발급된다.

7. 자동차 운행허가

이주자는 이주 후 관할 교통부서에 차량운행 허가를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

8. 호적증명서

이주자 본인이나 그 양친아 서독외의 지역에서 혼인관계를 맺었을 경우, 이들에게는 정착지 관할 호적상에 신규호적 발급신청을 하도록 권한다.

9. 연방실향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주를 강제당한 이들은 이들에 관한 법령 제3조의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참조 : 실향민 관계법령 제3조

- (1) 소련점령지역 망명자란 독일 국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독일민족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소련점령지역에서 살다가 자유의사와는 일치되지 않는, 정치관계로 인한 특수한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지역에서 탈주한 이를 말한다. 특수구속상태란 인체나 생명 혹은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위험이 있음을 가리킨다. 특수한 구속상태하에서는 또한 엄중한 양심의 갈등을 빚기도 한다. 생활기반이 파괴되었거나 크게 손상되었을 때 혹은 파괴나 엄중한 손상의

위협이 직면해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 역시 특수한 구속상태로 간주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련점령지역 망명자로 보지 않는다.

1. 소련 점령지역내 체제에 유리한 행위를 한 자.
2. 인도주의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3. 서독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

10. 실향민

강제 추방된 실향민은 실향민 관계법 15조가 규정하는 증명서(Fluechtling sausweis)를 즉각 신청,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11. 군복무

19세 이상의 군복무 대상자는 이주 후 2년안에 걸쳐 군복무를 필해야 한다. 동독에서 필한 군복무기간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12. 주택마련

정착시까지 이주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임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 개인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적시에 입지 관할주택건설 지원 부서에서 보조내력에 대해 문의를 해야 한다.

13. 주거 보조비

이주 후 특정조건하에서 주거 보조비(임대보조금, 자택의 경우 부채상환 보조금)를 받을 수 있다. 주거 보조비의 액수는 다음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 가계에 속한 가족수
- 임대료
- 가족의 수입

14. 가구 및 생활용품 장만에 따른 지원

이주 후 이주자 기숙사에서 임시로 살다 처음으로 개인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사람은 주택자금을 유리한 이자로 대부받을 수 있다.

15.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인정

동독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는 서독에서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학교 입학 및 취업종사에 필요하다. 증명서의 인정은 주 당국의 관할이며, 증명서를 동독에 두고온 경우 동독의 증명서를 발급한 당국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6. 취업알선, 직업상담, 실업보조

취업알선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청(Arbeitsamt)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선택의 문제는 노동청 직업상담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 취업알선 신청을 하는 날부터 취업이 될 때까지, 노동청에서 고용촉진법에 따라 적응비 또는 실업보조를 받게 된다.

17. 자녀양육 보조비

자녀양육 보조비에 대한 청구권리를 갖는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자녀가 서독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특별한 조건하에서는 동독에 거주하는 자녀도 고려될 수 있다. 자녀양육비는 16세까지 지급되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 27세까지 연장된다. 1986년 1월 1일부터 저임금자에 대해서는 자녀양육 추가보조금이 지급된다.

18. 연금

이주 전까지의 서독 이외지역에서 총 근로년수는 법적 연금 관계상 서독에서 근로한 것으로 처리된다. 연금액수는 연금지불기간, 자녀교육기간 등등에 의해 결정된다.

19. 사고보험

근로 도중 사고시 동독에서 법적 노동재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서독으로의 이주 후 서독법에 의해서도 보장된다.

20. 건강보험

소독 또는 베를린에 정착하기 시작한 날 또는 그후 3개월 내에 병들게 되었을 경우 실향민법에 의해 법적 건강보험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기 예방 및 임

산부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병수당은 이주적응비조로 지불된다.

21. 강제부담피해(Lastenausgleich)

동독에서 압수, 몰수, 파괴로 인해 겪은 피해나 재화를 서독으로 가져오지 못해 빚어지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강제부담피해 보상법(Lastenausgleichsgesetz)에 따른 보상청구권리가 주어진다. 단 피해자는 피해인정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정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964년 12월 31일 이후 서독으로 이주한 피해자는 가족과의 합류를 위해 이주하였거나 소련점령지역 망명자일 경우 피해보상청(Ausgleichsamt)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실향민도 실향지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22. 전쟁피해자 원호조치

양차대전 피해자는 관계법령이 명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 전쟁포로 및 정치범 가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전쟁포로 및 정치범 가족은 생계보조비법에 의해 전쟁유가족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전쟁 중에 납치된 자 또는 외국군에 의해 강제 억류된 자는 전쟁포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24. 사회부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사회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부조의 종류와 규모는 개별 경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 생활비 보조

— 특별경우에 대한 보조 : 질병부조, 지체부자유자의 적응 보조비, 중환자 및 노령자 간호보조비, 특수 곤경상황 극복을 위한 보조, 노년층에 대한 보조사회부조는 금전 및 물질적 보조(예 : 의류 제공, 고아원·양로원 거주지 제공)와 인적 지원을 포함하는 바, 이는 스스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또는 가족이나 후생복지단체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 생계보조비

생계보조비법에 따라 한 쪽 부모와만 살고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별거해 사는 다른 쪽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거나, 양부모가 사별하여 고아보조비를 받지 못하는 두 경우는 미혼모 자녀가 받는 금액에 상응하는 생계보조비를 최고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26. 종전 전의 공공업무 종사자

제국시절 공공부서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공무원, 사무원, 근로자, 직업군인 등의 공공업무 종사자들은 관계법에 따라 보험·연금·생계보조 등의 소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27. 귀향자

전쟁(2차대전을 지칭)포로였다가 석방되어 귀향하는 이들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28. 전쟁포로 내지는 피납자

전쟁으로 포로가 되었거나 강제 역류 내지는 피납되었던 독일인들은 수감기간에 대해 전쟁포로보상법이 명시하는 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다.

29. 정치적 수감자

제3제국 시절에 정치적 수감 대상자였던 이들은 관계법령이 명시하는 혜택조치를 받을 수 있다.

30. 감세조치

집기 또는 의복 장만을 위한 지출은 수입세법 제33조에 따라 이주 후 첫 5년 동안 감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정 세무전문가들과의 조세상담은 무료다.

31. 부부간 소유재산권 - 법률상담

부부간 각기 소유재산권에 대해서는 1969년 8월 4일자 법령이 적용된다. 기혼 이주자의 경우 이 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주 즉시 주거지 관할 법원에 연락을 하여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32. 유언장

자필이던 공증에 의한 것이던 것과는 상관없이 동독에 두고온 유언장은 있을 수 있는 상속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독으로 송부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33. 형사상의 처벌

서독에서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을 형법상의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집행이 이미 종료되었던 아니던가와는 상관없이 서독내 주거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형집행 무효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연방법전 I, 161면) 이럴 경우 고등검찰은 동독내에서 행해진 유죄선고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한다. 소장이나 판결사본을 소자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지를 - 가능한한 많은 근거 자료들과 증인을 동원하여 -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자료가 충분치 못할 시는 확인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34. 생명보험 및 연금

종전 전에 맺어진 생명보험 및 지불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직 유효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보험기관에 지불 요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서독에서 체결된 사례에만 적용된다.

35. 화폐

1. 종전 전에 제국화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지 화폐를 DM과 바꿀 수 없다.
2. 제3국이나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상의 권리는, 이것이 종전전 제국화폐로 이루어졌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처음부터 서독 지역에 소재했던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상의 권리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3. 공기업체를 포함하는 제국정부에 대한 이권은 전쟁사후 관리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
4. 동독에 예치된 특정 적립금은 구비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 월 200DM까지 서독으로 이전될 수 있다.

36. 젊은 이주자들의 동화를 위한 보조

35세까지의 이주자들은 이를 위한 적립금 규정에 따라 3년간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 초·중·고 교육, 직업교육 등의 이수과정
- 직업준비과정, 보완직업교육 등의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
- 전문인 양성교육과
- 직업전환교육 등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이주 후 2년내에 신청을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조비는

-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보조비 결제시까지의 예비보조금과
- 다른 규정 때문에 교육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거나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를 위한 추가보조금으로 정의된다.

37. 학자금 보조

고등학생, 대학생, 대졸자들은 학교교육의 지속 및 사회편입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해 Otto Benecke 장학재단(본 소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38. 대졸자 사회진출을 위한 보조

동독에서 정구대학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30-49세 사이의 이주자들은, 그 자격증이 서독에서는

-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정될 경우
- 인정이 되지만 보완교육과정을 추가로 뒀해야 될 경우 사회진출을 위해 보충강의나 보충단기코스 이수목적의 보조금을 Otto Benecke 장학재단으로부터 지불 받을 수 있다.

39. 전문인 직업교육 보조

전문인 직업교육은 공공수단으로 지원된다.

40. 학자들의 동화 보조

이주로 인해 서독대학에서 연구 활동상의 장애를 겪게 되는 학자들은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육성대책은 서독대학이 주 관할부서의 동의를 얻어 그 학자를 연구업무에 채용하기로 하여 육성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에도 그 대학에서 계속 근무케 할 것을 확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보조조치는 2년간에 걸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41. 청소년 이수자들을 위한 상담 및 보호 업무

전 청소년 사회복지기구는 청소년 이수자들의 사회편입 어려움을 덜어줄 상담 및 보호 임무를 갖는다. 특히 사회·학교·직장에서의 적응문제, 각종 관청에서 서식작성 보조, 각종 법규와 사회적 시설에 관한 정보제공 등이 제공된다.

42. 가정문제, 독신, 노령자들에 대한 상담·원호조치 제공 등 각종 구호·사회 복지 기관(카리타스, 디아코니세스 등)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웃과의 교제, 친구소개, 각종 사회기관 소개 불건구입, 자녀 유치원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43. 이수자들의 원호와 동화문제 담당기관 이수자들의 원호와 동화문제는 일차적으로 각 주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인 Gemeinde와 Kreis에 설치된 피해보상청에서 원호, 동화 및 피해보상 청구권 문제를 취급한다.

통연 96-5-11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발행처 통일원 통일연수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901-7123·4, FAX: 901-702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266-0892

인쇄일 1996년 5월 23일

발행일 1996년 5월 25일

(비매품)